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1022-01

협동조합 업무지침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2021. 4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협동조합 업무지침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발 간 등 록 번 호
11-1051000-001022-01

협동조합 업무지침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2021. 4

기획재정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CONTENTS

Ⅰ 일반사항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및 제·개정경과 ····· 14

2. 협동조합 개요 ····· 20
- 가. 협동조합의 정의 ····· 20
- 나.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 21
- 다. 다른 조직과의 비교 ····· 22
- 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 26

3. 협동조합 업무체계 ····· 27

Ⅱ 총칙

1. 명칭 ····· 30
- 가.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 30
- 나.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 31
- 다. 연합회의 명칭 ····· 33

2. 법인격과 주소 ····· 37

3. 협동조합의 의무 ····· 38

4. 협동조합 정책 ····· 39
- 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 39
- 나.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 45
- 다. 시 · 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 46
- 라. 협동조합 실태조사 ····· 47
- 마.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 52
- 바. 협동조합의 날 및 로고 · 슬로건 ····· 54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5
-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5
- 나. 다른 법률의 준용 ····· 56

Ⅲ 협동조합

1. 개요 ····· 60

2. 설립 ····· 61
- 가. 설립신고 절차 ····· 61
- 나. 설립신고 서류 ····· 69
- 다. 성립 및 설립무효 ····· 75
- 라. 변경신고 ····· 76

3. 조합원 ····· 80
- 가. 자격 및 가입 ····· 80
- 나. 출자 및 책임 ····· 81
- 다. 의결권 및 선거권 ····· 83
- 라. 탈퇴 ····· 84
- 마. 제명 ····· 85
- 바.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86
- 사.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87

4. 기관 ····· 88
-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 88
- 나. 임원 ····· 91
-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 96
- 라. 선거운동의 제한 ····· 99

5. 사업 ····· 101
- 가. 사업의 내용 ····· 101
- 나. 사업의 이용 ····· 104

6. 회계 ····· 106
- 가. 회계 ····· 106
- 나. 경영공시 ····· 111

7. 합병 및 분할, 해산 및 청산 ····· 117
- 가. 합병 ····· 117
- 나. 타법인(상법상 회사) 흡수합병 ····· 122

CONTENTS

다. 분할 ····· 129
라. 해산 및 청산 ····· 134
마.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간주 ····· 138
바. 조직변경 ····· 141

8. 등기 ····· 146
가. 설립등기 ····· 146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147
다. 이전등기 ····· 148
라. 변경등기 ····· 149
마. 합병등기 ····· 150
바. 해산등기 ····· 150
사. 계속등기 ····· 151
아.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 151
자. 조직변경등기 ····· 152

9. 감독 ····· 155
가. 감독 ····· 155

10. 우선출자 ····· 157

Ⅳ 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 168

2. 설립 ····· 169
가. 설립신고 절차 ····· 169
나. 설립신고 서류 ····· 176
다. 성립 및 설립무효 ····· 182
라. 변경신고 ····· 183

3. 회원 ····· 187
가. 자격 및 가입 ····· 187
나. 출자 및 책임 ····· 187
다. 의결권 및 선거권 ····· 189
라. 탈퇴 ····· 190
마. 제명 ····· 191
바.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191
사.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 ····· 192

4. 기관 ····· 194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 194
나. 임원 ····· 197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 202
라. 선거운동의 제한 ····· 204

5. 사업 ····· 206
가. 사업의 내용 ····· 206
나. 사업의 이용 ····· 209
다. 공제사업 ····· 209

6. 회계 ····· 216
가. 회계 ····· 216
나. 경영공시 ····· 221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 226
가. 합병 ····· 226
나. 분할 ····· 231
다. 해산 및 청산 ····· 236

8. 등기 ····· 241
가. 설립등기 ····· 241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242
다. 이전등기 ····· 243
라. 변경등기 ····· 244
마. 합병등기 ····· 245
바. 해산등기 ····· 245
사.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 246

CONTENTS

V 사회적협동조합

1. 개요 ····· 252

2. 설립 ····· 253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 253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 263
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기준 ····· 270
라. 성립 및 설립무효 ····· 272
마. 정관변경 ····· 273

3. 조합원 ····· 275

가. 자격 및 가입 ····· 275
나. 출자 및 책임 ····· 277
다. 의결권 및 선거권 ····· 279
라. 탈퇴 ····· 280
마. 제명 ····· 281
바.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282
사.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283

4. 기관 ····· 284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 284
나. 임원 ····· 287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 292
라. 선거운동의 제한 ····· 295

5. 사업 ····· 297

가. 주사업 ····· 297
나. 기타사업 ····· 308
다. 소액대출 ····· 311
라. 상호부조 ····· 312
마. 사업의 이용 ····· 313
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315

6. 회계 ····· 319

가. 회계 ····· 319
나. 경영공시 ····· 324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 330

가. 합병 ····· 330
나. 타법인 흡수합병 ····· 335
다. 분할 ····· 345
라. 해산 및 청산 ····· 350
마. 휴면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간주 ····· 354
바. 조직변경 ····· 357

8. 등기 ····· 363

가. 설립등기 ····· 363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364
다. 이전등기 ····· 365
라. 변경등기 ····· 365
마. 합병등기 ····· 366
바. 해산등기 ····· 367
사. 계속등기 ····· 367
아.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 368
자. 조직변경등기 ····· 369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 372

가. 감독 ····· 372
나. 설립인가 취소 ····· 374

10.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 379

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 385

VI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 390

2. 설립 ····· 391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 ····· 391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 ····· 398

CONTENTS

다. 성립 및 설립무효 ····404
라. 정관변경····405

3. 회원···· 407

가. 자격 및 가입····407
나. 출자 및 책임····407
다. 의결권 및 선거권 ····409
라. 탈퇴····410
마. 제명····411
바. 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411
사.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412

4. 기관···· 414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414
나. 임원····417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422
라. 선거운동의 제한 ····424

5. 사업···· 426

가. 사업의 내용 ····426
나. 사업의 이용 ····429
다. 공제사업····429

6. 회계···· 436

가. 회계····436
나. 경영공시····441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447

가. 합병····447
나. 분할····451
다. 해산 및 청산····457

8. 등기···· 462

가. 설립등기····462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463
다. 이전등기····464
라. 변경등기····464
마. 합병등기····465
바. 해산등기····466
사.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466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469

가. 감독····469
나. 설립인가 취소 ····474

10. 지정기부금 발행···· 476

11. 총회 의사록 공증 면제 추천···· 477

Ⅶ 이종협동조합연합회

1. 개요···· 482

2. 설립···· 483

가. 설립인가신청 절차····483
나. 설립인가신청 서류····490
다. 성립 및 설립무효 ····496
라. 정관변경····497

3. 회원···· 499

가. 자격 및 가입····499
나. 출자 및 책임····500
다. 의결권 및 선거권 ····502
라. 탈퇴····502
마. 제명····503
바. 지분 및 출자금 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504
사. 탈퇴 회원의 손실액 부담····505

4. 기관···· 507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507
나. 임원····510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515
라. 선거운동의 제한 ····517

CONTENTS

5. 사업 ····· 519
가. 사업의 내용 ····· 519
나. 사업의 이용 ····· 522
다. 공제사업 ····· 523

6. 회계 ····· 530
가. 회계 ····· 530
나. 경영공시 ····· 538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 543
가. 합병 및 분할 ····· 543
나. 해산 및 청산 ····· 545

8. 등기 ····· 550
가. 설립등기 ····· 550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 551
다. 이전등기 ····· 552
라. 변경등기 ····· 553
마. 합병등기 ····· 554
바. 해산등기 ····· 554
사.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 등기 ····· 555

9.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 558
가. 감독 ····· 558
나. 설립인가 취소 ····· 563

Ⅷ 보칙

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568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70

Ⅸ 벌칙 및 과태료

1.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절차 ····· 574
2. 벌칙 ····· 576
3. 과태료 ····· 579

Ⅹ 부록

1. 협동조합 법령 ····· 586
가. 협동조합 기본법 ····· 586
나.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627
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 645
라.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 655
마. 별지서식 ····· 656

협동조합 업무지침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I

일반 사항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및 제·개정경과
2. 협동조합 개요
3. 협동조합 업무체계

0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배경 및 제 · 개정경과

법 제정 배경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구조조정의 최소화, 빠른 경영정상화 등으로 경제안정에 기여*하여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모델로 주목을 받게 됨

- UN도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효과 및 사회통합 기능에 주목하여 각국에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

* 스페인의 3대 기업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연합체'는 '08년 금융위기시 협동조합 간 고용승계 등으로 구조조정 없이 위기를 극복

** '09년 UN 136호 결의문("Resolution 64/136.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에서 2012년 '세계 협동조합의 해' 선포와 함께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권고

각국의 협동조합 관련 입법 현황

기본법 체제	독일,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포르투갈, 태국 등
기본법 + 개별법	한국(기본법 제정 후), 프랑스, 러시아
개별법만 존재	한국(기본법 제정 전), 일본, 루마니아, 우루과이
민법, 상법 형태	영국, 스위스, 멕시코, 벨기에, 이탈리아, 체코, 뉴질랜드 등
기타	중국, 덴마크, 노르웨이, 미국

•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법이 없어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 설립 분야 제한

- '협동조합'을 지향하고 협동조합적 사업* 운영을 희망하나 법인격이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단체* 다수

* 출자자와 이용자의 일치, 1인 1표의 사업운영, 사업이익의 균등한 분배 등

** 전국적으로 약 4천여 개의 협동조합 지향 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연대회의'를 발족하여 입법청원('11. 10월)

기존 8개 개별법상 협동조합

• **생산자 조합**
  - 1차 산업 :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농림축산식품부), 엽연초조합(기획재정부), 산림조합(산림청)
  - 2차 산업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벤처부)
  - 3차 산업 : 신용협동조합(금융위원회) ·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 **소비자 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공정거래위원회)

• 사회양극화 확산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필요성 증대

법 제·개정 경과

• 민주당 손학규 의원 발의로 「협동조합기본법안」 국회 제출('11.10.12, 기재위)
• 국회 본회의 최종 의결('11.12.29) 및 국무회의 의결('12.1.17)
• 「협동조합기본법」 공포('12.1.26) 및 시행('12.12.1)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14.1.21)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4.7.22)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14.12.30) 및 시행('15.7.1)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15.7.1)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16.3.2)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16.8.29.)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17.8.9)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개정('20.3.31)

※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은 뒤편의 「참고」 참조

참고 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20.3.31) 내용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법인격 도입

-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개별법상 협동조합(생협, 신협)이 참여하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설립 근거 마련

신고수리 · 설립인가 등 간주제 도입

- 법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인가) 여부 또는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기한 종료 다음날 신고수리(인가)로 간주

우선출자제도 도입

- 협동조합의 내부자금 확충을 위하여 잉여금 배당에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 발행 근거를 신설하고, 우선출자 총액한도 및 배당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휴면조합 해산 간주제 도입

- 휴면조합의 정리를 유도하고, 일정요건이 충족된 경우 휴면조합은 자동적으로 해산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합원 당연탈퇴사유 정비

- 개정 민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치산선고'를 대신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개정

임원 결격사유 추가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추행의 죄(300만원 이상의 벌금형)를 범한 자를 임원결격사유에 추가

참고 2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16.3.2) 내용

연합회에 국가나 시·도명칭 사용 허용

-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협동조합 등기 항목에 임원(이사장 제외) 주소 제외

- 협동조합 설립등기 기재 항목에서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주소 제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 연장 및 기한 내 미등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재 완화

-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 기한을 21일에서 60일로 연장
- 설립등기 기한 내 미등기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기존에는 '인가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였으나, 이를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제재를 완화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 연장

- 출자금 변경 등기 시한을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가능한 비영리법인 확대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 민법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까지 포함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의결요건 완화

- 민법 및 기타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전원 동의에서 구성원 2/3이상의 동의로 조직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참고 3 「협동조합기본법」주요 개정(‘15.7.1) 내용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법률에 규정

- 협동조합의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조정하고,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
-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심의회 개최 주기 원칙을 매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

비조합원(비회원)의 사업의 이용 허용

- 협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에게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을 원칙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
- 공제사업을 제외하고 조합원(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비회원)도 사업 이용가능
- 연합회에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연장

- 2012.12.1.일 이전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에 한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기한을 2015.11.30일까지 1년 더 연장(법 부칙 제2조)

참고 4 「협동조합기본법」주요 개정(‘14.1.21) 내용

연합회의 대표성 오인 명칭 사용 금지

-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국가·지자체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오해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선거관련 규정

- 범죄구성·형벌 부과 시 위반사항을 법률에 정하여야 하나, 형벌이 부과될 수 있는 임원 선거운동 제한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삭제(죄형 법정주의 위반)

정치적 중립성 강화

- 협동조합의 정치 세력화 또는 악용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 의원의 협동조합 임직원 겸직 불허 조항 신설

타 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허용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가능 대상 법인을 확대하고, 신고 및 등기 등의 전환 절차를 구체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공공기관 우선 구매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 조항 신설

협동조합연합회 공제사업 허용

-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허용

02 협동조합 개요

가 협동조합의 정의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하고 있음

• 협동조합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의미

• 협동조합연합회

-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 · 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의미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의미

•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섯 이상의 기본법 또는 개별법(생협, 신협)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한 연합회를 의미

나 협동조합의 특징 및 효과

특징

• 협동조합은 조합원 공동소유 · 민주적 운영 · 지역사회 기여 · 자율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조직형태

국제협동조합연맹(ICA,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는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천명

*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선언(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95년 ICA 100주년 총회시 발표(ICA 홈페이지 : www.ica.coop)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 사회적 · 인종적 · 정치적 · 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 잉여금은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효과

• 경제주체별 효과

- (소비자)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여 편익 증가

  * 한살림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기농 재배 농산물은 산지 직거래를 통해 일반 매장 대비 30% 정도 저렴함

- (생산자)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 보장

  *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축산 농가는 다른 우유업체(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농가들보다 더 높은 가격에 원유를 납품

- (근로자)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고용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 대리운전기사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고객에게 받는 수입 중 사업주 귀속분(20~30%)을 자기수입으로 전환 가능

• 경제적 효과

- 소액 · 소규모 창업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 생산자 ·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안정
- 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경제안정화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기존의 복지시스템 보완
-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근린서비스, 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등 민간 차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기타

-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다 다른 조직과의 비교

협동조합은 「상법」상 "회사", 「민법」상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과 사업목적 · 설립 및 운영 방식 · 책임 · 범위 · 규모 · 성격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음

협동조합과 「상법」상 회사

• 「상법」상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법인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등이 이에 해당

• 협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상법」상 회사와 공통점이 있으나,

-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인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공헌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의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민법」상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기타 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이 있음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으로서 「민법」이 규율하고 있으며, 설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조세의 감면, 경비의 보조 등 세법 및 기타 행정법상 특별한 보호와 더불어 주무관청에 보고, 사무의 검사 등의 감독이 이루어짐

• 사회적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법인세 감면 및 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과 공통점이 있으나,

- 사회적협동조합은 법령에서 정하는 주사업을 40%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음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등과의 관계

•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법인 ·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의 조직 중에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 ·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① 독립된 조직형태일 것 ②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며, 일자리제공형이나 사회서비스 제공형 또는 지역사회 공헌형 중 하나에 부합할 것 ④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⑤ 정관에 법정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될 것 등

• "마을기업"이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 「상법」상 회사와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이 택할 수 있는 조직형태임

사업	근거	주무부처	사업내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 위탁사업 • 기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 취약계층에 일자리 ·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공헌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	행정안전부	• 도농 소득 · 일자리 창출 • 지역사회 발전

참고 1 | 「협동조합」과 「회사」의 차이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주식회사(상법)
목 적	• 자주 · 자립 · 자치적 협동조합 활동 촉진 • 상생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	• 상행위에 관한 규정(회사)
정의	• 조합원의 권익 향상 •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 (사회적)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 증진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설립목적 운영원칙	•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및 상호부조 • 자발적 결성,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 • 투기목적의 행위 금지 • 소수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사업 금지 • 다른 협동조합등과 상호협력, 공동사업	• 영리 목적
공직선거	• 특정정당 지지 금지	• 없음(정치자금법 등에 적용)
의결권 및 선거권	• 출자좌수와 관계없이 1인 1표	• 1주 1표(주식회사) * 1좌 1표(유한회사)
제명	• 일정기간동안 협동조합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조합원 제명 가능	• 없음
사업	• 아래 사업을 반드시 포함(일반) – 조합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등 – 협동조합간 협동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에 기여 • (사회적협동조합) –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활성화, 권익 증진 –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 22개 행위로 구분(상법제46조) 1.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매매 2.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의 임대차 3. 제조, 가공 또는 수선에 관한 행위 등
운영의 공개	• 경영공시자료 게재(사회적협동조합)	• 경영공개(주식회사)
적립금	•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 법정적립금으로 적립	• 없음
배 당	•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함 •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 주총 결정사항
잔여재산 처리	• 해산시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은 연합회 등 귀속(사회적협동조합)	• 청산규정에 따라 청산 • 없음(비영리법인 해당, 민법)
자금조달 금융사업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출자금 한도내에서)	• 다양한 금융사업 (단 금융업법 적용)
출자방식	• 조합원의 출자, 우선출자	• 채권, 유상증자 등

참고 2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사단법인 · 협동조합 비교

구분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기본법		민법상 사단법인
종류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협 동 조 합		사단법인
						일반	사회적	
사업목적	이윤 극대화					조합원 실익증진		공익 또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을 것
운영방식	1주 1표	1좌 1표	1인 1표			1인 1표		1인 1표
설립방식	신고제					신고 (영리)	인가 (비영리)	허가제
책임범위	유한 책임			무한책임	무한책임 +유한책임	유한책임		해당 없음
규모	대규모	주로 중 · 소규모				소규모 + 대규모		주로 소규모
성격	물적결합	물적 · 인적결합	물적 · 인적결합	인적결합	물적 · 인적결합	물적 · 인적결합	인적결합	인적결합
사업예시	대기업 집단	중소기업, 세무법인 등	컨설팅, 전문서비스업 등	법무법인 등	사모투자 회사 등	일반 경제 활동 분야	의료 협동 조합 등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등
	○○전자 (주) 등	세무법인 ○○ 등	○○컨설팅 등	법무법인 ○○ 등	○○○○ PEF 등			
영 리 법 인							비영리법인	
사 회 적 기 업								

라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협동조합기본법」은 다른 개별 협동조합법과는 달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2종 구조"를 도입

- 최근 세계적으로 사회적 목적(공익)의 실현을 위한 협동조합과 그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

  * '70년대 유럽에서 등장하여 '91년 이탈리아에서 사회적협동조합법 제정이후,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도 법제화

  - 별도로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법적근거를 마련 사회서비스 활성화 및 공공서비스 보완에 기여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 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기획재정부(관계부처) 인가
사 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경영공시	• 의무사항 아님 ※ 조합원수 200인이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의 경우 의무	• 의무사항
법 정 적 립 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 잉여금의 30/100 이상 ※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배 당	• 배당가능	• 배당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 · 국고 등 귀속
감 독	• 직권 또는 신고에 따른 조사, 시정명령	•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 인가요건 위반시 인가 취소

03 협동조합 업무체계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업무 총괄
-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및 시 · 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의 운영
- 소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신고 수리,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 등

중앙행정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인가(설립 · 정관변경 · 합병 · 분할), 해산신고 수리, 청산사무의 감독, 해산등기 촉탁, 감독, 설립인가 취소, 청문, 과태료 부과

지방자치단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내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정관 등 설립신고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수리, 벌칙 · 과태료 부과
- 시 · 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위원으로 참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협동조합 교류협력 · 경영지원 · 교육훈련 · 홍보에 관한 업무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 협동조합 경영공시 내용 확인 등

중간지원기관

-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인가지원, 협동조합 경영컨설팅 등 협동조합 설립 · 운영 지원(전국 16개소)

협동조합
조합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업무
지침

II

총 칙

1. 명칭
2. 법인격과 주소
3. 협동조합의 의무
4. 협동조합 정책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01 명칭

가 명칭의 사용 및 금지 사항

법 제3조(명칭)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 · 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 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함(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6조, 제7조)
- 한글 또는 한글 · 영문 병기하여야 하며(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 협동조합(APPLE cooperative),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안 됨(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제5조)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598호)

제5조 (로마자 등의 병기 방식) ①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이하 “상호의 등기”라 한다)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ABC Construction Co., Ltd.)

제6조 (띄어쓰기) ① 상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한 칸 띄우고, 나머지 부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식품, 갑을식품 주식회사

제7조 (정관상 기재 방식과 등기) ①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는 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3. 상호는 정관상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제6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과 나머지 부분 사이를 제외하고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등기한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협동조합”이라는 명칭 사용 불가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1항제2호)

기존 8개의 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사용 금지(개별 협동조합 관련법에 의해 사용 금지)

-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명칭 사용 금지

나 중복 또는 혼동되는 명칭 금지

법 제3조(명칭) 및 시행령 제2조(명칭)

법 제3조(명칭) ② 이 법에 따라서 설립되는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②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 및 다른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중복 또는 및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다른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 사용 금지
  - 시 · 도 및 중앙부처는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설립인가 신청 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 확인
  - 명칭이 협동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

다른 협동조합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 제119조제1항제1호)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명칭을 변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부과

명칭의 중복 금지

-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 · 시 · 군에서 다른 협동조합이 등기한 명칭 사용 금지
- 동일명칭 확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 → 법인등기 → 열람하기 → 상호로 찾기"에서 명칭 입력

명칭의 혼동 금지

- 사업구역과 사업분야 · 조합원 구성을 병기함으로써 다른 협동조합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 혼동 최소화

사업구역과 사업분야 병기	사업구역과 조합원의 구성 병기
성수 수제화 협동조합 은평구 어린이집 협동조합 부산 수산유통 협동조합	서울 상담전문가 협동조합 송파 행정사 협동조합 제주 감귤생산자 협동조합

- 고유명사만 사용하거나, 고유명사와 업종 병기 가능(ex. 늘푸른 협동조합, 두리베이커리 협동조합)
- 사업, 구역, 조합원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협동조합 전체를 대표하거나 연합회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사용 금지(ex. 협동조합 중앙회, 중앙협회 협동조합, 전국연대 협동조합)

다 연합회의 명칭

법 제3조(명칭), 시행령 제2조(명칭), 시행규칙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제2조(명칭 사용 요건)

법 제3조(명칭) ④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 · 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 · 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이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 · 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시행령 제2조(명칭) ③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 · 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 · 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협동조합연합회등으로서 시 · 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다만,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해당 시 ·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2분의 1 이상의 시 · 군 · 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다.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 · 군 · 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라.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2조(이의신청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따라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연합회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협동조합연합회 등 명칭사용 기준 고시 제2조(명칭 사용 요건)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라목 및 제2호라목에 따라 명칭 사용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 수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가.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이며,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 · 도내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이상일 것.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가목에서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로 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등이 법 제80조, 제115조 및 제115조의7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 조직 등 필요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연합회는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안 됨

연합회 명칭 사용 기준

•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 대한민국, 대한, 한국, 코리아, KOREA, Republic Of Korea, ROK 등 국가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전국’, ‘국가’ 등과 같이 국가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명칭 사용금지
- ‘중앙’, ‘고려’ 등 비국가명칭과 과거의 국가명칭 사용가능

• 시 · 도의 대표성이 있는 명칭 사용금지

- 서울특별시, 서울시, 서울, SEOUL, SEOUL Metropolitan 등 시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경상남도, 경상도, 경남도, 경상, 경남, 영남, Gyeongsangnam-do, Gyeong-Nam 등 도의 국문과 영문 명칭 및 약칭 사용금지

※ 다만, 시 · 군 · 구 명칭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음

• 연합회의 성격, 사업분야,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연합회와 구별되는 명칭 사용

- 연합회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 사용

  예시) 내고장 특산물 협동조합연합회

- 업종별 연합회의 경우 업종 표기

  예시) 광주 체육도장 협동조합연합회

- 명칭이 협동조합의 사업분야와 내용, 사업구역, 조합원 구성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조정하도록 권고

• 예외적으로, 출자금, 회원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 명칭 사용 가능

예시) 한국협동조합연합회, 서울협동조합연합회

국가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 ⅰ) 출자금이 2억원 이상일 것
  ⅱ)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 중 2분의 1 이상의 시 · 도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ⅲ)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 · 도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ⅳ)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①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전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0이상일 것
② 협동조합 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으로 함

※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

시·도 명칭을 사용하려는 경우

- ⅰ)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ⅱ) 해당 시 · 도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 · 군 · 구(자치구를 의미) 중 2분의 1 이상의 시 · 군 · 구에 회원이 분포되어 있을 것
  ⅲ) 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개 시 · 군 · 구에 집중되어 있지 아니할 것
  ⅳ) 그 밖에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회원수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①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원수가 시·도내 일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수의 1/20이상 일 것
② 회원수는 명칭 사용인가 신청 시점의 전월말까지 설립신고한 누적 일반 협동조합 수(인가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수) × 54.2%으로 함

※ 다만,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조합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원의 자격에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합산하여 산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연합회가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음

• 이때, 해당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연합회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1항제3호)

연합회 명칭 관련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행정소송

• 이의신청

- 기획재정부장관은 연합회가 국가나 시 · 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협동조합연합회등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협동조합연합회등은 명칭의 금지 또는 수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연합회 명칭 사용금지 또는 수정 명령 이의신청서")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회신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등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 가능

02 법인격과 주소

법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법인격

•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법인'

- 법인은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 가능함

※ 다만,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하지 않는 것도 가능함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잉여금이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에 대한 배당 금지

※ 법인의 영리, 비영리 구분은 잉여금의 구성원 배당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수익사업과는 별개임. 비영리법인의 경우도 수익사업 가능

주소

• 주소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로 구분

- "주된 사무소"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하며,
- "지사무소"란 주된 사무소 이외의 모든 사무소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음

• 정관상 주소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 또는 군까지 명시(상업등기법 제29조)

- 예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성남시, 경상남도 김해시, 전라북도 전주시

03 협동조합의 의무

기본원칙(법 제6조)

-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
-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
-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 금지

협동조합의 교육훈련 및 상호협력(법 제7조 및 제8조)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
-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
  - 정관에 조합원(또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제공,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 반드시 포함(법 제45조, 제80조)

공직선거 관여 금지(법 제9조)

-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대통령선거 · 국회의원선거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 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
- 협동조합을 이용하여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 반대하는 행위 및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금지(개인명의의 정치자금 기부는 가능)
- 이를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제1호)

04 협동조합 정책

가 협동조합 기본계획

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법 제11조)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및 여건 조성
  -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 협동조합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
  -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

-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 육성
- (4대 핵심전략) △ 시장참여기회 확대 △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교육확대 및 인력유입 활성화 △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활성화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

- (목표)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 (4대 핵심전략) △ 자생력 제고 △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 네트워크 강화 △ 인식개선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 (목표)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 (5대 핵심전략) △ (A)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 (B)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 (C) 지역사회 중심 운영 △ (D)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 (E) 교육 및 홍보 내실화

가-1.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추진방향

비전: COOP 2.0 시대로의 도약

목표: 협동조합의 성장기반 확립 및 정체성 강화

성과지표	´18년	´22년
평균출자금	5,744만원	8,000만원
평균매출액	3.7만원	6.0억원
취약계층 고용비율	42.3%	45%
연합회·협의회 가입률	39.9%	60%

전략

A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 지원 •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 협동조합 스케일업을 통한 성장지원
B	Band 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 연합회 역할 강화 • 협동조합간 연대 촉진 • 자율규제 강화
C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 지역 전달체계 개선 • 자치단체 사업 참여 확대 • 자치단체 추진체계 공고화
D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진입제한 완화 및 동등한 혜택 제공 • 기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 금융조달 애로 해소
E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 준비된 창업을 위한 사전 교육 강화 • 현장·참여형 교육 확대 •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홍보

5대 전략별 주요내용

① (Advance: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미래 인구변화, 4차 산업혁명 시대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한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발굴하고, 협동조합 스케일업 지원

- 돌봄 협동조합, 프리랜서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모델 등 협동조합 특화모델을 육성하며,

> • **(돌봄 협동조합)**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아동·노인 돌봄 분야 진출 활성화
> • **(프리랜서 협동조합)**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 등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화 및 운영 지원
> • **(노동자협동조합 전환)** 후계자 없는 기업, 경영위기 기업 등을 노동자들이 인수하여,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기관 운영 및 제도개선 추진

- 사업연합·합병, 성공모델의 복제·확산 등으로 규모화 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② (Band: 협동조합 간 연대 강화) 협동조합 간 연대를 통해 자생(自生), 자립(自立), 자정(自淨)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으로 협동조합 정체성 고양

- 교육·컨설팅 등 협동조합 지원사업 체계를 연대조직 중심으로 개편하고, 이종 협동조합 공동사업* 발굴·확산,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연대를 촉진할 계획임

* (예시) 이종 협동조합간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의 푸드플랜 사업 참여

생산(기본법 협동조합) ➡ 가공(기본법 협동조합) ➡ 유통·판매(생협)

⬆ 금융(신협)

③ (Community: 지역사회 중심 운영) 자치단체를 지원체계의 허브로 재편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동조합 운영구조 구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중간지원기관 통합·연계, 시·도협의회 활성화 등 지역 전달체계 및 추진체계를 개선하고,
- 지역 맞춤형 협동조합 사업모델 개발을 지원하며,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임

④ (Deregulation: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차별적인 규제를 해소하고 기존 법인(상법상 회사 등) 위주의 법·제도 개선

- 협동조합 진입이 제한되는 차별적 법·제도를 개선*하고, 유사 조직(사회적기업 등)에 준하는 혜택**을 제공하며,

* 장애인법령 상 장애인 기업 인정범위에 장애인 협동조합 포함, 전통시장법령 상 상인조직 유형에 시장상인이 조합원인 협동조합 포함

**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

- 우선출자제도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내부조달 강화 등 금융조달 애로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⑤ (Education: 교육 및 홍보 내실화) 사전 교육, 현장·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의 내실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을 통해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협동조합 성과 관리·홍보를 강화할 계획임

가-2.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7~’19)

추진방향

비전 :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목표 : 협동조합 내실화를 통한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4대 핵심전략	11대 정책과제
자생력 제고	1. 판로 개척 지원 2. 자금조달 경로 확대 3. 내부 역량 강화
고용친화적 분야 확대	4.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5. 민간위탁시장 진출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6.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
네트워크 강화	7.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성장 여건 조성 8. 민관 파트너십 강화 9. 협동조합 관리 체계 효율화
인식개선	10. 대국민 홍보 강화 11. 미래 세대의 교육 확대 및 글로벌 연대 강화
추진기제	• 지역밀착 및 규모화된 유형별 협동조합이 주도적 역할 • 정부는 정책·사업 환경 연계를 통한 간접지원

주요내용

① (자생력 제고) 협동조합의 판로지원 및 자금조달 경로를 확대하고 경영교육 · 컨설팅을 강화하여 내부 역량 제고

-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내실화*하고 개별법 및 기본법 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하여 상호거래 및 협력 촉진

  * 공공기관 평가 시 공공구매 실적 배점 상향, 구매종합정보망 구축 등

- 한국에 적합한 협동조합 금융모델 개발 등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전용자금으로 활용 검토
- 컨설팅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경영진단 제도*’를 도입하고, 민간공인자격제 도입, 대학 내 비학위과정 개설 등을 통해 전문가 육성

  *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대상 온라인 상담 및 현장방문 컨설팅 지원

② (고용 친화적 분야 확대)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민간위탁 참여 확대 등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불공정 계약 등 기존 프랜차이즈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을 규모화하기 위해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지원 강화**

  * 영세 자영업자(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협동조합 형태(조합원으로 참여)로 설립

  ** 가맹본부 설립 ·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자금(기술개발, 홍보, 공동장비 구입)을 패키지 지원

  *** (사례) 소셜카페 협동조합(마을카페 8개), 와플대학 협동조합(49개)

- 사업고용 협동조합* 모델 도입, 직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고용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유도

  * 협동조합이 방송, 번역 등에 종사하는 프리랜서와 고용계약을 맺어 교육, 홍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고 협동조합은 프리랜서가 납부한 수수료로 운영

  ** 신규 창업 및 기업 인수 시 필요한 자금 지원 등

- 사회적협동조합의 민간위탁 시장진입 확대를 위해 민간위탁규정에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하고, 가산점 부여,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컨설팅 제공 등 여건을 조성
- 청년, 예비 창업자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도 확대

③ (네트워크 강화) 부처 간 협업 및 민 · 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협동조합 관리체계를 효율화

-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농어업법인 등의 대상에 포함하여 우선구매 등 동일한 혜택을 받도록 제도 개선
- 협동조합 중간지원기관 역할을 강화하고 휴면조합의 해산절차 간소화, 협동조합 성과지표 개발 등 관리체계를 고도화

④ (인식개선) 홍보 및 교육 확대 등을 통해 협동조합 긍정적 인식 확산

- SNS, 카드뉴스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학교 협동조합 활성화, 자유학기제 등을 통해 청년층 대상 교육 확대

가-3.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14~´16)

추진방향

비전	일자리 창출과 복지전달 효율화로 따뜻한 성장 달성
목표	협동조합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건실한 협동조합을 육성 – 2016년말까지 취업자 5만명 달성 –
4대 핵심분야	① 시장 진입: 시장참여 기회 확대 ② 자금 조달: 자금에 대한 접근성 제고 ③ 인력 양성: 교육 확대 및 인력 유입 활성화 ④ 연대 · 협력: 협동조합간 네트워크를 활성화
추진기제	• 민간이 자주 · 자립 · 자치의 원칙 하에 주도적 역할 • 정부는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주요내용

① (시장진입) 기존 법인만을 상정한 법 · 제도로 발생한 차별 시정 및 정책 정비를 통해 협동조합의 참여 영역을 확장

- 사회적협동조합에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도입하고, 기본법상 협동조합과 타 법 법인과의 M&A를 허용*

  * 일반협동조합 + 영리법인 →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전달주체로 참여를 확대

② (자금조달) 기존 재정사업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내부 및 외부 자금의 활용을 확대하는 기회를 마련

- 소상공인협업화사업, 마을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등 정책자금 활용 매뉴얼의 홍보를 강화하고, 자금 공급과 컨설팅 역할을 할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기금 육성을 유도할 예정

- 지역신보 등에서 실시하는 협동조합 특례보증 확대와 농협 · 수협 등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이용을 확대*

  * 민간금융기관에 비해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익숙한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차별 없는 자금조달 추진

③ (인력양성) 현장전문가 육성, 교육 · 홍보 강화를 통해 역량 강화

- 사이버 교육 시스템 마련으로 기본교육 내실화, 중간지원기관 인력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노력하고,
- 주택, 에너지, 지역재생 등 대표적인 비즈니스 사업 모델과 사회 문제 해결 가능 분야를 인큐베이팅하고 성공 사례를 홍보
- '사회적기업의 날', '협동조합의 날' 행사의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투자 설명회를 통해 창업 아이템 홍보의 장을 마련

④ (연대 · 협력) 기본법 및 개별법상 협동조합, 중앙 · 지방정부, 국제기구 등을 포괄하는 협동조합 네트워크 구축

- 협동조합 제도, 설립 · 운영 · 해산 절차, 교육 · 홍보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등재하고, 생산자 · 소비자간 직거래 활성화 등 내부거래 플랫폼(B2B) 구축
- 중간지원기관은 설립상담 위주의 컨설팅에서 판로 개척, 회계 · 노무 · 법무 등 경영컨설팅으로 역할을 확대

나 협동조합 정책심의위원회

목적(법 제11조의2 제1항)

-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둠

구성(법 제11조의2 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의2)

-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위원) 공무원인 위원(정부위원) 및 위촉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
  - 정부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산림청 등

  - 위촉위원은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임기는 2년

심의사항(법 제11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의 설립 · 합병 · 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와 관련된 사항
- 협동조합의 관리 · 감독과 관련된 사항
-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 등

운영(시행령 제3조의3)

-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일정 조정 가능
-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다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목적(시행령 제4조 제1항)

-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 · 도지사와 협의 · 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 · 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를 둠

구성(시행령 제4조 제3항, 제4항)

-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위원) 각 시 · 도 협동조합 담당 국장 또는 본부장 등 20명 이내
- (간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협의 · 조정 사항(시행령 제4조 제2항)

-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의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운영(시행령 제4조 제5항, 제6항)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 청취 가능
- 관계 기관 ·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참석 등 필요한 협조 요청 가능
-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함

라 협동조합 실태조사

목적

-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 · 현황 · 자금 · 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 마다 실시(법 제11조제6항)

  ※ 2013년(제1회), 2015년(제2회), 2017년(제3회), 2019년(제4회) 협동조합 실태조사 실시

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1조제7항)
- 이사장(경영자료 등), 조합원(의사결정구조 등), 임금근로자(근무현황) 등이 설문지 작성
- 우편, 전화, e-mail 등을 통해 조사 실시
- 결과 공표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법 제11조제6항)

주요조사항목

- 설립현황 : 설립소요기간, 신생설립여부, 법인등기 여부 등
- 사업현황 : 사업시행여부, 수익창출방식, 사업목표 달성도 등
- 구성원현황 : 이사장 특성, 근로자 특성, 조합원 특성 등
- 재무상황 : 총자산 현황, 운영자금 구성현황 등
- 정책활용 : 현행정책에 대한 이용률 및 향후 필요정책 등

참고 1 | 제4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20.3월)

(협동조합수) ′18년말 신고 · 인가 기준으로 14,526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3차 조사(′16년말기준, 10,615개) 대비 36.8% 증가

- ′18년 사업을 운영중(과세신고 또는 고용보험 가입실적 존재)인 협동조합은 7,050개로, 3차 조사(5,100개) 대비 38.2% 증가

(조합원수) 조합당 67.0명으로 3차 조사(61.6명) 대비 5.4명 증가

(고용현황) 총 피고용자수(임금근로자+유급형 임원)는 31,335명으로, 3차 조사(20,409명) 대비 53.5% 증가

- 평균 피고용자수는 4.4명으로 3차 조사(4.0명) 대비 0.4명 증가, 평균 임금근로자수는 3.8명으로 3차 조사(3.5명) 대비 0.3명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66.0→70.8%), 월평균 임금(131.3→158.2만원)이 3차 조사 대비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은 42.3%로 3차 조사(43.4%) 대비 1.0%p 감소하였으나, 취약계층 고용인원은 3,581명(7,662→11,243명) 증가

(재무현황) 평균 자산(1.4→2.3억), 출자금(47→57백만원), 매출액(2.7→3.7억)이 3차 조사 대비 증가

(연대) 협동조합의 39.9%가 연합회 등에 가입(3차 32.2%)하고 있으며, 연대사업 경험 비율은 29.9%(3차 30.9%)

(지역사회 기여)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재투자 활동은 262억원(3차 234.8억원)으로 추정되며, 조합당 평균 899만원(3차 881만원)

(정부 정책) 자금지원(4.27점), 판로지원(4.14점), 세제혜택(4.08점)을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

참고 2 | 제3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8.2월)

(협동조합수) ′16년말 신고·인가 기준으로 10,615개 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차조사(6,235개)에 비해 증가(4,380개)

(조합원수) 전체 조합원수는 31.3만명이며, 평균 조합원수는 61.6명으로 2차조사(46.8명)에 비해 14.8명 증가

(고용현황) 전체 종사자수는 6.9만명이며, 평균 종사자수*는 13.5명으로 2차조사(8.2명)에 비해 5.3명 증가

* 취업자, 근로자 외 무급형 사외이사와 자원봉사자 포함

- 평균 근로자는 4.3명으로 2차 조사(2.9명)에 비해 1.4명 증가

  * 근로자 중 취약계층(%) : (20.2→ 34.7)

- 월평균 급여(주 34시간 기준)는 정규직은 147만원, 비정규직은 92만원

  * 월 법정근로시간 174시간(유급휴일제외) 기준으로 추정시 월 평균급여는 186만원 수준

(재무현황) 평균 자산, 매출 및 총수입*은 2차 조사에 비해 증가

* 자산(억원) : (0.6→1.4), 매출액(억원) : (2.1→2.7), 총수입(억원) : (2.3→2.9)

- 다만, 당기순익(1,935→373만원)은 2차조사에 비해 감소

(자금조달) 금융기관 이용*(21.1%)보다 조합원 출자확대(42.3%), 이사진 차입(39.6%) 등 내부 자금조달 의존

* 애로사항(%) : 담보 부담(24.0), 과다한 서류 제출(16.7), 재무성과 입증(16.1) 순임

(지역사회 투자) 협동조합의 52.4%가 지역사회에 재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조합당 평균 462만원

(사업운영율)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53.4%로 2차조사(54.6%) 보다 1.2%p 낮은 수준

* 미운영 이유(%) : 사업모델 미비(25.5), 자금 부족(22.1), 조합원간 의견불일치(17.6) 등

참고 3 |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5.12월)

(사업운영률)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은 전체 협동조합의 55.5%로 13년 1차조사(54.4%)에 비해 소폭 상승

(조합원수) 조합당 평균 47.3명으로 1차조사(58.7명)에 비해 감소

(고용현황) 평균 종사자수는 13.2명으로 1차조사(7.7명)에 비해 증가

* 임원 +0.2명, 직원 +0.9명, 자원봉사자 +4.4명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취업자는 4.3명으로 1차조사(5.8명)에 비해 1.5명 감소(임원 △2.2, 직원 +0.9, 유급자원봉사자 △0.2)
- 평균 월급여는 이사장 168만원, 상근이사 154만원, 정규직 직원은 143만원, 비정규직 직원은 98만원

(재무현황) 평균 자산은 5,744만원, 출자금은 4,069만원이며, 부채는 1,675만원으로 1차 조사에 비해 규모가 증가

- 조합당 수입은 2억 3,871만원(매출액 2억 1,402만원, 영업외수입 2,469만원)이며, 당기순이익은 1,923만원

(정책수요) 판로지원(40.7%), 금융인프라 확보(17.7%), 중간지원기관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제공(16.7%), 연대촉진(10.0%) 順

- 정부 정책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은 48.1%, 중간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조합은 58.8%

(지역사회 기여) 전체의 49.4%가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했으며, 2014년 1년간 활동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0억 7,795만원

참고 4 | 제1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13.12월)

(설립) 신생설립이 97.7%(739개)이고 설립기간은 약 2.6개월 업종은 도소매(28.2%), 농 · 수 · 임업(14.2%)이 많고, 법인등기를 마친 곳은 87.1%(651개),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은 54.4%(406개)

(사업) 협동조합들은 기존사업영역을 기반(91%)으로 조합원을 주요고객(35%)으로 한 공동판매(51.4%)가 주 수익창출방식

- 사업시행 협동조합의 목표 매출액 평균은 1억 8,641만원, 목표 이윤은 3,991만원이나, 2분기달성도는 각각 26.6%, 15.5% 수준
- 목표달성이 어려운 주된 이유는 판로 미확보(29.3%), 정부지원 부족(18.2%), 조합원 부족(15.2%) 순

(구성원) 이사장은 대졸학력 · 50대 · 남성 · 중소기업 출신이 다수이고, 평균 조합원 수는 58.7*명, 평균 취업자 수는 5.83명이고 이중 신규 창출된 인원은 3.5명

- 직원을 고용한 협동조합은 416개(55.7%)로 임원과 직원의 평균 급여는 114만원~177만원 수준, 4대 보험가입률은 정규직은 61%~64%정도이지만 비정규직은 약 21% 정도

* 1,100명이 넘는 대규모 협동조합(7개) 제외시 평균 조합원 수는 30.6명

(재무) 7월 기준 협동조합 총자산은 약 293억원이고 조합원 출자금은 약 218억원(74.4%), 운영자금은 출자금(72.2%)을 주로 이용

(정책) 현행정책 중에는 중간지원기관 설립상담을 많이 이용,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공공 조달시장 우선권 부여(31.5%), 금융시스템 구축(23.8%)을 제시

마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기본원칙(법 제10조제1항)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못함

자금지원(법 제10조제2항)

-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가능

경영지원(법 제10조의2)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 · 기술 · 세무 · 노무 ·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

교육훈련지원(법 제10조의3)

-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법 제95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 · 서비스의 우선구매 계획 및 실적을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

다른 법령 개선을 통한 주요 지원 사항

- '중소기업'에 일정 조건*을 갖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 업종별로 매출액이 기준금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 등

- '사회적기업 인증대상'에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추가(「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8조)
- '지정기부금 단체'에 사회적협동조합 추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전체 사업량의 40%이상을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한 연합회로 한정한다) 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한 지정기부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22호)

참고 |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및 요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 상담 및 컨설팅 (진흥원, 지원기관) → 신청서 접수 (진흥원)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진흥원, 지원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 인증소위원회 사전심사 (고용노동부) → 육성위 심의 (고용노동부) → 인증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구분	인증요건	사회적협동조합 해당사항
①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출 것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직형태를 갖춘 것으로 인정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③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취약계층고용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업형 사회적협동조합은 해당 유형의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변경사항 없음
⑥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협동조합은 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정관은 확인하되 별도 증빙서류 제출은 불필요)
⑦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 합자 조합일 경우)	• 사회적협동조합은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

바 협동조합의 날 및 로고·슬로건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지정(법 제12조)

-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 정부, 지자체는 자율적으로 기념식, 박람회, 학술행사(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간담회), 영화상영 등 개최 가능

협동조합 로고

협동조합
KOREA COOPERATIVES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공동으로 소유함을 표현

협동조합 슬로건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공통의 목적을 가진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함께 모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며
협동조합을 통해 행복을 나눈다는 의미

05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13조제1항)

- 농협 · 수협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 · 신용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등 기존의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적용하지 않음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함(법 제13조제2항)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 요건 · 절차 ·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법 제45조제2항)

-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을 부여하고 설립 ·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조직법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할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예를 들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영유아보육법」에, 운수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요건과 절차 등을 거쳐야 함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법 제13조제3항)

- 공정위 예규상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면제대상인 안전지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협동조합 간 건전한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

  ※ “안전지대”란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일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공정위가 원칙적으로 심사를 개시하지 않는 심사면제 대상

-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동법 적용

구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이 제외되는 협동조합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 제외(법 제13조제4항)

-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 내부통제기준, 모집관련 준수사항, 자산운용 원칙, 감독 등 적용 제외

나 다른 법률의 준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

- "상인"은 "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1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간주

※ 상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상법 제1편 총칙’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4조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협동조합등이라 함
제21조	동일한 영업에는 단일상호 사용, 지점의 상호에는 본점과의 종속관계 표시
제23조	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사용 금지
제23조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 청구 가능
제29조	협동조합등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작성
제33조	협동조합등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보존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
제37조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함
‘상법 제2편 상행위’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함
제64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상법 제3편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를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87조의7	조합원등의 책임은 이 법에 따른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함
제287조의32	협동조합등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

-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제115조의8제2항을 적용받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간주

※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민법 제1편 제3장 법인’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37조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
제51조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등기하여야 함
제52조의2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
제61조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함
제63조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함
제65조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음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함

협동조합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업무지침

함께 만드는 희망
함께 나누는 행복

III

협동조합

1. 개요
2. 설립
3. 조합원
4. 기관
5. 사업
6. 회계
7. 합병, 분할, 해산 및 청산
8. 등기
9. 감독
10. 우선출자

01 개요

정의

•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 생산 · 판매 · 제공 등을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함(법 제2조제1호)

특징

구분	협동조합 주요특징
법인격	(영리)법인
설립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설립신고
수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 발급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해당시), 이사회
조합원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 · 선거권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수행가능, 조합원에 대한 교육 · 협동조합 간 협력 ·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필수 포함
사업의 이용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도 사업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조합원 수 200인 이상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경영공시 의무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감독	감독 관련 규정 존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가능

설립현황

• '19.12월말 기준 (일반)협동조합은 15,052개가 신고수리되어 전체 협동조합(16,895개) 중 약 89.2%를 차지

※ 자세한 협동조합 설립현황은 www.coop.go.kr에서 확인 가능

02 설립

가 설립신고 절차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분	절 차	비 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자연인, 법인)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
7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시 · 도지사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 작성(법 제15조제1항)
  -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법 제20조)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 개최
  - 설립동의자의 개인정보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진행,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식별,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등을 위해 활용(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33조)
  -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으므로,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주민등록번호 파기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법정서식은 없으나, 기본법 제16조(정관)제1항의 필수 기재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3. 설립동의자 모집

- "설립동의자"란 조합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 포함

4. 창립총회 공고

-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
  - 일간지 게재, 벽보 게시,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정관에 사이트 주소 명시해야 함)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
  - 의사록 공증 및 설립등기 과정에서 공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공고 게시 사진 등 증빙자료 준비를 권장
  -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시 · 도는 공고기간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반려
  - 공고기간이 7일 미만이더라도 설립동의자 전원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고, 총회 소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령 제6조의 취지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
- 창립총회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5. 창립총회 개최

- 창립총회 필수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이사장은 이사 선출 후, 이사 중에서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주사무소 세부 소재지 확인 포함)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 작성

6. 설립신고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신고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시 · 도지사)에게 신고
  - 조례로 시 · 도지사가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를 위임한 경우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
- 설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신고 내용을 즉시 등재하여야 하며, 이로써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에의 통보를 갈음

7. 신고확인증 발급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및 시행령 제8조(설립신고확인증의 발급)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② 시 ·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설립신고확인증(시행규칙 제8호 서식)' 발급

- 시 · 군 · 구청장에게 설립신고 업무가 위임된 경우 시 · 군 · 구청장 명의로 신고확인증 발급
- 시 · 도지사는 설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처리기간의 계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①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 · 경유 · 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 · 검사 · 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아래의 사항은 민원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함
  · 신고확인증 발급 처리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되지 않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 설립신고의 반려가 가능한 사항(시행령 제8조)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 발기인은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법 제18조제1항)

9. 출자금 납입

• 이사장이 발기인대표로부터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함(법 제18조제2항)

- 이사장 명의의 계좌로 출자금을 납입하며, 등기 시 출자금 납입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잔액증명서 제출(설립신고서상 출자금 납입총액과 통장잔고가 일치하여야 함)
- 현물출자자는 납입기일 안에 출자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

법인등기 전	→	법인등기	→	법인명의 통장개설
이사장 명의의 통장에 출자금 납입		이사장 명의 통장의 출자금 납입총액 확인		법인명의 통장개설 및 출자금 이체

10. 설립등기

법 제61조(설립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하며, 협동조합은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출자금의 납입"이란 출자자명부에 기재된 출자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
  - 등기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1호)

11.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하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가능(부가가치세법 제8조)
  -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개시하는 날, 기타의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등을 의미
  - 등록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함이 원칙이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 정도 소요
- 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전용 사무실 확보
  - 주거하는 주택을 주된 사무소로 할 수는 있으나, 사업자등록 시 주된 사무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을 위한 전용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권유

  ※ 제조업, 인쇄업 등의 경우 전용 공간이 있어야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신고확인증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	정관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록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출
4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5	출자자명세서	
6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	해당 법인에 한함. 허가(등록 · 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
7	자금출자 명세서	
8	현물출자명세서	현물출자법인에 한함
9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사업 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사업자 등록 신청 요함

참고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회」에서 추진하는 ○○○협동조합(가칭) 설립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 및 운영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22조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및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 진행
- 출자금 확인 및 관리를 위한 개인 식별
- 설립동의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작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조합원 탈퇴시 파기하며, 출자금 반환 등의 사유로 내부규정에 의해 최대 2년간 보존할 수 있음
- 단, 주민등록번호는 설립신고 등 설립업무가 완료되면 즉시 파기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및 제24조의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정보는 설립신고, 법인등기,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의 사유로 필요시 아래의 기관에 제공될 수 있음

가. 정보제공 기관

- 설립신고 관련 : 기획재정부, 주사무소 관할 시·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법인등기 관련 : 주사무소 관할 등기소
- 사업자등록 관련 :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

나. 정보제공 범위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별 내부규정에 따름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시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제공,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동조합의 설립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협동조합(가칭) 설립발기인 대표 귀하

나 설립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7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 ·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발기인 및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제71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또는 협동조합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명부
9.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법 제56조제1항 · 제2항 및 제83조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만 해당하며,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 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사본

구분	설립신고 서류	비 고
1	설립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정관 사본	법정 서식 없음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법정 서식 없음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5	임원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6	사업계획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법정 서식 없음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법정 서식 없음

1. 설립신고서

- '협동조합 설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설립신고인이 되어야 하므로 발기인 또는 설립동의자 중 1인이 설립신고인이 됨

    ※ 행정사는 설립신고인이 될 수 없음

2. 정관

법 제16조(정관)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8.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0.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해산에 관한 사항
14.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협동조합 정관예시'를 참고하되, 협동조합 고유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작성
  - 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은 반드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 외의 사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모두 정관에 규정할 필요는 없으며, 필요한 경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법 제17조)
- 주요 확인사항
  -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협동조합의 명칭 등 정관의 내용이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
  - 출자 1좌의 금액을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 사업내용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관계없이 너무 많은 사업을 열거하지 않아야 함
  - 5인 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정관에 기명날인(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또는 서명 하여야 함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음
  -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조합원의 자격요건,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포함
- 주요 확인사항
  - 필수 포함 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 창립총회 개최 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공고방법은 정관에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정관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였는지 확인
  - 공고문을 게재한 신문, 벽보 게시사진 등 공고를 입증하는 자료를 통해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했는지 확인

4. 창립총회 의사록

시행령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서식

- 법정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핵심 내용에 대한 개조식 서술도 가능
  - 총회개최 일시 및 장소, 참석자, 안건, 의장 및 기명날인자 선출과정, 필수의결사항,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의장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의장과 이사장이 다른 경우 (임시)의장과 이사장 모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
  -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자 3인을 선출하지 않았을 경우, 설립동의자 중 이사와 감사 등 임원으로 선출된 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선출된 임원이 모두 설립동의자인 경우)
  - 공증을 위해 인감도장으로 기명날인할 것을 권장

• 주요 확인사항

- 정관, 사업계획과 예산, 임원의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등기 시 편의를 위하여 주사무소 주소를 창립총회 의사록에 기재할 것을 권장
- 임원의 선출방법이 법 제34조(임원) 및 정관에 합치하여야 함

  · 이사 먼저 선임 후, 이사 중에 이사장 선출

  · 정관에 기재된 임원의 대상 및 자격에 맞게 선출하여야 함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

- 창립총회의사록은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하며, 공증을 위하여 원본 2부 작성(공증인법 제63조 및 제66조의2)
- 공증인사무소에 1부 제출, 등기소에 1부 제출
- 등기소에는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지참시 사본 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음(지역 등기소 확인필요)
- 협동조합이 원본을 소장하기 위하여 원본을 3부 작성하는 것을 권장

※ 공증준비서류 (공증사무소마다 첨부서류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필요)

1. 창립총회의사록 원본 2부(인감도장 날인 및 간인 필요)
2. 정관
3. 이사장의 진술서
4. 조합원 명부
5. 조합원의 인증 관련 위임장
6. 조합원의 인감증명

5. 임원명부

• 서식

-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등록번호 기재
- 임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되어야 함
- 이사 및 감사의 수가 정관에 부합하여야 함
-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출되어야 함(총회 의사록에서 확인)
-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의 정보를 기재
- 임원이 법 제3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 임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함께 받아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79호)의 서식 활용

6. 사업계획서

• 서식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 서식 중 "해당연도 사업계획(제2쪽)"란에는 정관에 규정된 모든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산출근거 기재
- 다만,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로서 예산 산출근거를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향후 추진계획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정관상 사업 내용이 사업계획서에 모두 기재되어야 함
- 법 제45조에 규정된 필수사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업의 범위에 "금융 및 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7. 수입지출예산서

• 서식

-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수입 · 지출 예산서(시행규칙 제5호서식)'

• 주요 확인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상 해당연도에 수행할 사업에 대한 수입과 지출내역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출자 1좌당 금액, 개인별 출자좌수, 총 출자금액 기재

• 주요 확인사항

- 출자 1좌의 금액이 균일하여야 함
- 모든 조합원이 1좌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초과하면 안 됨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서식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 협동조합의 설립을 준비하고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발기인으로, 발기인이 아닌 자로서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를 설립동의자로 구분하여 기재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 서식

- 법정 서식은 없으며, 사본 제출
- 총회의사록 작성방법 준용

• 주요 확인사항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 · 의무가 반드시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함(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법 제56조제1항 · 제2항(합병 및 분할)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경우에만 제출(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9호)

※ 참고사항

• 설립신고 시 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 제출서류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음

- 다만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원본대조필 도장 날인)하여 제출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 · 지출 예산서 상의 사업내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일관성이 없을 경우 서류 보완 요청

• 잘못된 작성례

- 정관에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서나 수입지출예산서에 작성
- 정관,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상의 사업명칭을 서로 다르게 작성
-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였으나, 수입지출예산서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아닌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기재하여야 하나 수지예산서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다 성립 및 설립무효

법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한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

• 협동조합의 설립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하므로 조합원,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협동조합 성립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만으로 협동조합 설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상법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제328조(설립무효의 소) ① 회사설립의 무효는 주주 ·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제186조 내지 제19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상법 제186조-193조

제186조(전속관할) 전2조의 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187조(소제기의 공고)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8조(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

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 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협동조합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2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협동조합과 조합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가 패소한 경우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된 사무소와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①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라 변경신고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및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법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령 제7조(협동조합 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방침

- 조합원 권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변경시마다 변경신고, 기타 사항은 연 1회 일괄 신고
  - (중요사항) 정관,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출자감소, 주사무소 주소
- 임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 (기타사항) 중요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신고사항
- 중요사항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 기타 사항은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경영공시 또는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

변경신고 절차

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중요사항, 기타사항)

총회의 의결	➡	변경신고	➡	신고확인증 발급
총회의결사항에 대해 총회개최 및 총회의사록 작성		주사무소 소재지 시 · 도지사에게 변경신고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① 설립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총회개최 및 의사록 작성(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

② 이사장이 신고인이 되며, '협동조합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

- 협동조합의 정관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 발생(법 제16조제3항)
- 법 제1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한 변경신고 후 서류 일체가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로 이송된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정관변경 신고

③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하며, 기타사항 변경신고 수리는 공문으로 처리

- 변경신고확인증은 변경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공휴일 제외)
- 시 · 도지사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 변경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반영

나. 경영공시를 통해 신고(기타사항)

① 기타사항 변경 시 다음연도 4월말까지 경영공시를 통해 변경신고 가능

- 경영공시 사이트(www.coop.go.kr) 공시 입력페이지 중 '변경신고'에 변경사항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면 변경 신고한 것으로 간주

  * 법상 경영공시 대상이 아닌 일반협동조합도 자율적으로 경영공시 가능

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경영공시 내용 확인 후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공문으로 변경사항 일괄 통보

③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변경사항 통보를 접수한 관할 시 · 도 담당자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반영

변경신고 서류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 · 지출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시행규칙 제6조제2항)'를 첨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 지출예산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5	신고확인증	협동조합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첨부서류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1	명칭, 이사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가. 신고확인증 1부 나. 명칭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다. 이사장 변경시 임원 변경 첨부서류 각 1부 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시 정관 변경 첨부서류 각 1부(정관상 세부주소를 기재한 경우)
2	임원 변경	가. 임원명부 1부 나. 임원 선출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구분	변경사항	추가 첨부서류
3	정관 변경	가.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1부 나. 정관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1부 다. 정관 변경 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 · 지출예산서 1부(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라.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의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출자 1좌당 금액 감소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③ 협동조합은 다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 · 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 다른 시 · 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변경신고

  ※ 기초자치단체로 협동조합 설립신고 업무 이관 시 다른 시·군·구로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신고

- 변경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공문에 변경신고서 사본 첨부)
  -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 · 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된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송부
  - 변경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협동조합 행정시스템"에 등재하고 변경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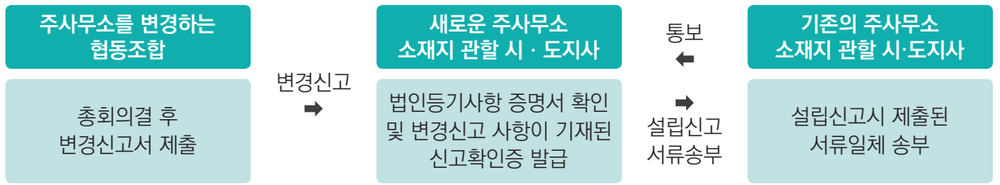

03 조합원

가 자격 및 가입

법 제20조(조합원의 자격) 및 제21조(가입)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조합원의 자격

- "조합원"이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함
-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음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 가능

※ (예시) 직원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을 '협동조합에 직원으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조합원의 가입

- (법인)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가능
  -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 (외국인)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 (미성년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하나 민법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 필요
-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 공무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 지배인 ·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공공기관 상임임원 및 직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협동조합의 임직원이 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 관계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7조(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자가 제한되므로 조합원으로 가입 불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나 출자 및 책임

법 제16조(정관) 및 제22조(출자 및 책임)

제16조(정관)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출자

- "출자"란 조합원이 조합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출연(出捐)하는 행위로,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함
-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함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최저 · 최고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됨
  - 조합원 1인이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 제한을 초과한 출자금은 출자금으로써의 효력은 인정된다 할 것이나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법 제119조제2항제1호)

현물출자

-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 가능
  - 현물출자의 경우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정관에 객관적인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방식(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액, 공시지가, 시가 등) 기재 가능
  - 설립등기 시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조합 명의로 발급 가능) 첨부

출자금의 납부

- 출자금은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다만 분할 납부를 할 경우, 출자금 분할 납부방법 및 시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분할납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

출자금의 사용

- 출자금은 사업운영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하며, 개인명의로 사용 금지
  -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과 가능) (법 제117조제1항)

출자금과 질권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質權)의 목적이 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자본금인 출자금은 조합원 탈퇴 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일반기업의 자본과는 다른 성격을 지님

※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무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채무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하여 채무변제를 강제하다가,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담보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출자금과 채권

-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債權)과 상계하지 못함
  - 협동조합에 가입할 설립동의자가 협동조합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자신의 채권과 상계 처리하여 출자금 납입을 갈음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협동조합 운영의 기초가 되는 자본금(출자금 납입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

출자금과 조합원의 책임

-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하므로 조합원에게 출자금 이외에 협동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다 의결권 및 선거권

법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인 1표의 의결권과 선거권

-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소유, 조합원의 의결권 · 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이를 무효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2항제3호)
  - 법인조합원의 경우 대표 또는 법인이 지정한 직무수행대리자가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함

대리인의 선임

-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
  -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을 협동조합에 제출
- 대리인의 범위는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 · 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함

라 탈퇴

법 제24조(탈퇴)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삭제 〈2017. 8. 9.〉
4.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탈퇴

- "탈퇴"란 협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조합원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이탈하는 것으로, 탈퇴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갖고 있던 일체의 권리 · 의무 상실
-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음

당연탈퇴 사유

- "당연탈퇴"란 조합원에게 기본법상 규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이 당연히 탈퇴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사유로 탈퇴
  -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 사망한 경우
  -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로 당연탈퇴

조합원 지위 · 지분 양도에 대한 총회의 의결

- '조합원의 지위 및 지분의 양도(법 제24조)'는 총회에서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는 조합원으로서 갖고 있던 권리(의결권 및 선거권, 사업의 이용, 배당 등)와 의무(선거운동의 제한, 겸직금지 등)를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을 의미
-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는 탈퇴 조합원이 갖고 있는 지분을 새로운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지분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며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의미

마 제명

법 제25조(제명)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명"이란 협동조합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을 의미

제명사유

-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자,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명절차

-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에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 찬성의 의결로 제명
  -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함

바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법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지분환급청구권

- 탈퇴 및 제명 조합원은 탈퇴 및 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 청구가 가능하며 총회의 의결을 필요
  - "지분"이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상의 금액으로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출자금 등으로 구성
- 지분은 탈퇴 및 제명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함
- 지분환급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다만, 지분의 범위는 추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확히 정관에 규정 필요

환급정지

-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음
  - "채무"란 협동조합으로부터의 차입금, 선급금, 외상판매대금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일체의 채무를 의미

사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법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 청구 가능
  - (예시) 탈퇴한 조합원이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출자액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에 대한 납입 청구 가능

※ 참고사항

- 협동조합 운영 중 조합원 수가 5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법에서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 원칙임(법 제57조)
  - 다만, 법 제14조는 법에 규정한 사항 외는 상법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협동조합에 조합원이 없게 된 경우 해산사유이며
  - 조합원 1인당 30% 초과 출자를 금지하는 출자금 제한 규정(법 제2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04 기관

가 총회 및 대의원총회, 이사회

총회

법 제28조(총회)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 "총회"란 조합원 다수의 의사에 의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 및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의미
  -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됨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 (정기총회)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결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승인을 위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
  - (임시총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 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 조합원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는 것도 가능함
  - 대리인 자격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에 한정됨

※ 다만, 총회 의결방법으로 서면결의는 불가

총회의 의결사항

법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 휴업 또는 계속
8. 조합원의 제명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0.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총회 의결정족수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1. 정관의 변경 2.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 해산 ·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 포함)에 대한 출자금 환급 5. 다른 협동조합에 대한 우선출자	1. 규약의 제정 · 변경 또는 폐지 2. 임원의 선출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보고서의 승인 5. 감사보고서의 승인 6.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2항3호)

대의원총회

법 제31조(대의원총회)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 조합원 수가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 구성 가능(시행령 제9조)
  - "대의원총회"란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협동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
  -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다만,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정할 수 있음)
-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이 행사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합병 ·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할 수 없음
-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사항
  -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의장이 됨
  -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 목적 · 안건 ·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 통지

이사회

법 제32조(이사회) 및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 "이사회"란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
  -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사항
  -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 규정의 제정 · 변경 및 폐지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등
-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않을 수 있음
  - 이 경우 정관에 법 제33조의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결정할 사항과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을 명시

나 임원

임원

법 제34조(임원)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로 구성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도 임원으로 선출 가능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
- 조합원인 법인도 임원으로 선출가능하며, 이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
  - 다만, 법인세법 109조에서 법인 설립 시 세무서에 "대표자의 성명"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세청 시스템 상 자연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연인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도록 권고
  -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사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는 것이 주된 직무이므로 자연인으로서의 의사 및 능력이 필요

임원의 임기

법 제35조(임원의 임기)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함
- 이사장은 2번만 연임이 가능하며,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
  -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초 개시되는 임기(4년의 범위 내)를 제외하고 추가로 두 번 더 연임이 가능하다는 의미*

    * 임원의 임기가 4년, 2차에 걸쳐 연임하는 경우 한 번에 최대 12년까지 재임 가능
- 결원이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임임원이 신규임원 선출 전까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
-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
  - 다만, 임기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결원에 따른 임원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음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법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 (기능) 후보자의 자격심사, 선거인명부의 확정, 선거인자격 이의신청에 대한 판정, 선거 관련 분쟁조정, 선거운동방법 위반여부의 심사, 위반 사례 발생에 대한 조치 등
  -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 위촉기간, 자격상실 규정
  - (운영) 위원장 및 위원의 선출방법 및 역할 등

임원 등의 결격사유

법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2.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의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를 통해 조회
  - 법인이 임원인 경우 임원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된 사람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 '결격사유 유무'는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의뢰하는 것도 가능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찰청으로 외국인의 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조회 의뢰

결격사유 발생시 처리

- 임원의 결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
- 퇴직된 임원이나 법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음

임원의 의무와 책임

법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 임원의 의무
  - 임원은 법령 및 총회 ·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 수행해야 함
- 임원의 책임
  -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제3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임원이 협동조합이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봄

임원의 해임

법 제40조(임원의 해임)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해임의 구체적인 사유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법령 및 정관 위반 시 해임
- 해임절차
  - 조합원은 조합원 1/5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 요구 가능
  - 협동조합은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 총회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원의 해임 결의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법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연합회를 대표할 수 없다.

- (이사장)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 집행
- (이사)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 대행
  - 이사장의 사고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및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만 이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있음

감사의 직무 및 감사의 대표권

법 제42조(감사의 직무)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감사를 주된 기능으로 수행하는 협동조합의 필수기관으로서,
  - 회계지식을 갖추고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는 자를 감사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

- 감사의 직무
  -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
  -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 대조 · 확인 가능
  - 이사장 및 이사가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 · 규약 · 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이사회에 시정요구
  -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
- 감사의 대표권
  -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경우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함

다 임직원의 겸직금지

임직원 겸직 관련 법령

법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시행령 제10조(협동조합 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 · 자산 · 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임원은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법 제44조 제3항 준용), 예외적으로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임원의 직원 겸직 가능
-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는 경우(시행령 제10조)

구분	내용	비고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직원협동조합)	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함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시행령 제10조 3호(협동조합의 규모 · 자산 · 사업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는 해당 규정에 따른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용 불가

- 겸직금지 사항
  - 이사장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다른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음
  -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참고 |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결격사유 조회 방법

①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을 통해 대상자의 결격사유 확인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 사무에 대한 열람권한을 부여받은 후, 열람하고자 하는 결격사유 대상자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뒤 조회 가능
- '결격사유 유무 조회'로는 결격사유의 해당여부만 조회가능하므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의뢰하여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확인

② (공문으로 확인하는 경우) '성명, 주민번호, 등록기준지(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음)'를 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 속한 기초자치단체에 공문으로 요청

- 등록기준지 최소단위구역이 '읍 · 면'인 경우 읍 · 면장에게, '동'인 경우에는 시장 · 구청장에게 의뢰

외국인 임원 결격사유 조회

- 외국인이 임원인 경우 신원조회는 불가하나, 국내체류기간에 대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확인 가능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해당지자체가 속한 지방경찰청으로 범죄경력 조회 의뢰(성명, 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여 조회 의뢰)

※ 신원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협동조합 설립신고 수리에 필요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귀 시 · 구 · 읍 · 면에 등록기준지를 둔 대상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기록사항을 조회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범죄경력조회 의뢰 공문

「협동조합기본법」 제36조,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범죄경력 확인을 위해 붙임과 같이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선거운동의 제한

법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 "선거운동"이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의사의 표시 등은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음
- 선거운동 제한은 협동조합의 임직원, 조합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적용

선거운동의 제한 사항

- 금품 등의 제공금지 등
  -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 운영하고 있는 기관 · 단체 · 시설에 대한 금품 등의 제공 금지
  -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금품 등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협동조합기본법 상,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
-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을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 기본법 제37조 제2항과 동일 취지의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은 처벌 대상 행위가 법으로 예측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18헌가12)을 받았음

※ 따라서 정관에는 동일 취지의 조항이나 기간을 명확히 명시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2항 규정을 참고하여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고

• 연설 · 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음

•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의 배부, 소형 인쇄물의 배부,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 전화 · 팩스 ·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법 제37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117조제3항)

05 사업

가 사업의 내용

법 제45조(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함

• 협동조합은 정관상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에 협동조합 고유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정관상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인지 판단

• 협동조합의 사업이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명칭, 조합원 구성 등과 맞지 않게 백화점식으로 나열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완 요구

필수 포함 사업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 · 요건 · 절차 ·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

• 협동조합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료법」, 「경비업법」 등 관련 사업을 관할하는 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받아야 함

- 협동조합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구입이 불가능, 「의료법」에 따라 안마원 운영이 불가능하므로,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고 타당한지 우선 확인

협동조합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금융 및 보험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거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종은 '참고'에 적시되어 있음
- 협동조합의 장례서비스 제공대상이 조합원으로 한정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협동조합의 조합원대상 상조사업 운영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해당여부

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기본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임

나. ○○○연합회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설립규약 및 ○○○협동조합연합회 상포계 규약 등에 따르면 ㈜○○○는 회원조합 조합원에게 상포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귀 연합회가 100% 주식을 소유하는 형태로 설립된 회사이며, ㈜○○○를 통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회원조합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다. 따라서 현행 ○○○협동조합연합회 정관, 선불식 할부거래회사 설립규약 및 상포계 규약에 의하면 ㈜○○○는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고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통계청고시 제2017-13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은행 및 저축기관	중앙은행	중앙은행
			일반은행	국내은행
				외국은행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신용조합
				상호저축은행 및 기타 저축기관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
				기타 금융 투자업
		기타 금융업	여신금융업	금융리스업
				개발금융기관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그외 기타 여신금융업
			그외 기타 금융업	기금 운영업
				지주회사
				그외 기타 분류안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생명 보험업
			손해 및 보증 보험업	손해 보험업
				보증 보험업
			사회보장 보험업	건강 보험업
				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재 보험업
		연금 및 공제업	연금 및 공제업	개인 공제업
				사업 공제업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	금융지원 서비스업	금융시장 관리업	금융시장 관리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증권 중개업
				선물 중개업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증권 발행, 관리, 보관 및 거래지원 서비스업
				투자 자문업 및 투자 일임업
				그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손해 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나 사업의 이용

법 제46조(사업의 이용) 및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1조(협동조합 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 · 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사업의 이용이란 협동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협동조합의 유형 및 조합원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의 이용이 나타남

※ (예시) 소비자협동조합은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사업자협동조합은 공동판매, 공동 자재구매 등이,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이 사업의 이용이 될 수 있음

-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음
- 잉여금을 배당하고자 하는 경우 협동조합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함(법 제51조제3항)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른 사업의 이용

유형	구분	내용
소비자 협동조합	정의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정관 예시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조합이 공동으로 구성한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산악협동조합을 통한 산악장비 구매,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육아서비스 이용, 주택협동조합의 주택임대서비스 이용
사업자 협동조합	정의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 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정관 예시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업(혹은 ○○시장 등 조합원 구성에 적합한 문구 적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조합원의 공동물류센터 이용, 자전거 협동조합 조합원의 자전거 부품 공동구매
직원 협동조합	정의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정관 예시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청소협동조합이 청소부를 직원으로 고용, 대리운전기사들이 대리운전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자신들이 대리운전기사가 되는 것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정의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정관 예시	"제2조(목적) ○○ 협동조합은 …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	도시락 협동조합에서 도시락을 만들고(사업자 또는 자원봉사)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후원자)하는 사업

06 회계

가 회계

회계연도

법 제47조(회계연도 등)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 “회계”란 재산의 증감 · 변동 · 수입과 지출 · 처리 등 재무에 대한 처리를 말하며, “회계연도”란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는 기간으로서 통상 1년을 1회계연도라고 함
-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별 사업부분은 정관으로 정함
  - (일반회계) 협동조합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 계리
  -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별자금을 보유 · 운영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사용 가능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법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사회		총회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운영의 공개

법 제49조(운영의 공개)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 운영의 공개 사항
  ①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② 총회 · 이사회의 의사록
  ③ 조합원 명부
  ④ 회계장부
  ⑤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개사항을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청구 가능
  - 원칙적으로 정보공개 시, 운영의 공개 사항 중 조합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1호)
  - 예외적으로 ① 정보 공개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② 정보 공개 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③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공개 가능함(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2)
- 협동조합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제2,3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법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정적립금”이란 법령에 의해 적립이 강제되어 있는 적립금

-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 적립
- “출자금 납입총액”이란 조합원들이 출자한 출자금의 총액을 의미하며, 우선출자금액은 포함되지 않음
-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정적립금 사용 금지

※ 법정적립금 관련 용어

구분	내용
잉여금	순재산액이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회계상 당기순이익
잉여금의 종류	자본잉여금 : 자본거래를 통해 발생
	이익잉여금 : 영업활동 등 손익거래를 통해 발생
순재산	총자산으로부터 총부채를 뺀 것으로,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이익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 자기자본(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합산하여 산정)이라고도 함
법정자본금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가 유지하여야 할 최소한의 자본으로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 총액을 법정자본금으로 간주

• “임의적립금”이란 협동조합이 임의로 적립한 것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가능

- 사업준비, 시설확장, 사업활성화, 결손보전 등으로 사용가능

손실금의 보전

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손실금(당기손실금)”이란 총수익이 총비용보다 적은 경우 발생하는 금액

•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당기손실금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잉여금의 배당

법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 배당 가능

- 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됨
- 배당세율은 배당소득의 14%(「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잉여금의 배당은 총회나 이사회의 필수의결사항이 아니므로 정관에 세부적으로 정하되, 모든 사항을 정관에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약에 일부를 정할 수 있음

결산보고서의 승인

법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결산보고서의 종류

- 사업결산보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

• 결산보고서 승인 과정

감사에게 제출	→	총회에 제출	→	총회 의결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		협동조합은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출자감소의 의결

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 필수기재사항이므로,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정관을 변경
  - 정관의 변경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대차대조표의 작성
  - 총회에서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협동조합은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함
- 이의신청 공고 및 채권자에 대한 공고
  - 대차대조표 작성기간(14일) 동안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공고일로부터 30일 이상)에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 최고의 효력발생 시기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민법 제111조제1항)

총회의 의결		대차대조표 작성		이의신청 공고
총회에서 출자 1좌의 금액 감소를 위한 정관 변경	➡	총회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	채권자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할 것을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봄
-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법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조합원의 외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설정하는 등)으로 하여서는 안 됨

나 경영공시

경영공시 관련 법령

법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2조(협동조합 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8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영공시) ①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 제1항제2호의 사업결산 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3호의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 활동 상황의 통합 공시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법 제49조의2제1항제4호의 사업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경영공시 대상

-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사업결산보고서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이상인 협동조합
  - 조합원 수가 200인 미만이거나,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원 미만인 협동조합도 자율경영공시는 가능함
- 경영공시 대상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하단의 경영공시 자료를 공시(법 제49조의2 제1항 각호)
  - 연도 중 설립된 협동조합도 자율경영공시 가능
- 법 제22조의2에 따른 우선출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은 자율경영공시를 실시하여야 함(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제1호)
- 자율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운영의 민주성·투명성을 고려해 시·도 사업 등 참여 시 정책적 지원 권고

경영공시 자료 및 게재방법

구분	내용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 협동조합의 정관을 게재하며 정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정관을 게재 • 정관에 발기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삭제하고 게재
사업결산 보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 직전 회계연도 '수입 · 지출예산서' 상의 예산과 '사업결산 보고서' 상의 항목 및 예산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 수입과 지출의 합계 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 ※ 연도 중 설립된 협동조합은 해당없음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 상황	•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 창립총회 포함
사업결과 보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 기재 ※ 연도 중 설립된 협동조합은 해당없음

경영공시 방법

- 총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공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협동조합 홍보포털) 에 공시(시행령 제12조제3항)

경영공시 절차

- 협동조합
  - 협동조합 홍보포털 홈페이지에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사업결과보고서, 총회 · 대의원총회 · 이사회 활동 상황 등을 등록
  - 정관 등 경영공시 자료에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핸드폰 연락처, 주소 등)가 포함되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

- 지방자치단체
  - 관할 협동조합 중 경영공시 대상(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30억 원 이상) 협동조합 현황을 파악하여 기획재정부에 통보
  - 관할 협동조합에서 등록한 정관, 사업결산보고서 등 경영공시 자료의 첨부 여부 확인
  - 경영공시 첨부자료와 시스템에 입력한 데이터의 일치여부 확인
  - 경영공시 자료 검토 후 미비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통보하여 보완
  - 관할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의무(공시기한, 허위사실 게재 등) 준수 여부, 협동조합기본법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시정명령, 과태료 및 벌칙 부과 등 조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및 중간지원기관
  -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의 공시 이행을 위한 결산 · 총회 개최 관련 법인 운영 실무 교육 및 경영공시 입력 지원
  - 공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는 후속조치 검토 필요 대상을 기획재정부에 전달

- 기획재정부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및 교육 등 경영공시 제도 총괄
  - 경영공시 시스템 개선 · 관리 및 제도 개선

협동조합	소관 지자체	진흥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홍보포털에 경영공시 입력	➡ 경영공시 자료 검토 및 최종확인	➡ 경영공시 입력 지원 및 후속조치 대상 확인	➡ 경영공시 가이드라인 작성 · 교육 등 총괄

- 기획재정부 장관은 통합 경영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고,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함
- 경영공시를 게을리 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119조제3항)

※ 자세한 사항은 「경영공시 가이드라인」을 참고

참고 1 | 회계기준

총칙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함
	기록보존기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보존 다만,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회계처리원칙	모든 회계처리는 계정과목에 의하여야 하며,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는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명확히 구분
	전결	경상비의 지출에 관한 사항은 이사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제정 가능
예산	예산총계주의	조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입하여 계리
	예산편성	매 회계연도마다 이사회에서 편성
	예산의 구분	예산은 자본예산과 경상예산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예산의 변경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업계획의 변경 등 예산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
	예산불성립시 예산집행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년도의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 지출 가능. 다만,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을 넘을 수 없음
	예비비 사용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
결산	결산서의 작성	결산은 예산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총회 제출 전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함
	계정이월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 말 각 계정잔액에 대한 실사를 필하고 총계정원장의 모든 계정을 마감하여 각 계정 잔액을 차기년도로 이월

※ '중소기업 회계기준' 일부 준용

수입과 지출	수입금 징수	수입은 출자금, 회비 등으로서, 수지예산서에 계상된 바에 의함
	지출의 절차	모든 지출은 수지예산서의 사업별 및 계정과목별로 지출 함을 원칙으로 함
장부	장부의 종류	주요부(전표, 총계정 원장), 보조부(각 계정 보조부)
	기장원칙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
	전표의 작성	전표는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전표에는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등 제증빙 서류 첨부
	지출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과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1호와 제158조제2항제1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 1. 신용카드 매출전표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4.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전표의 정리	전표는 매월 분을 취합하여 이사장이 날인

출자 및 자본	자본의 구분	자본은 출자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분
	출자금	출자금은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
	현물출자	현물출자의 대상은 대차대조표에 기재할 수 있는 모든 자산으로 하며, 출자 시에 출자의 목적물 전부를 일시에 조합에 인도하여야 함. 현물에 대한 가격의 결정에는 전문기관의 인정이나 가격표 또는 공정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
	자본잉여금	조합원과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여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차익 포함 자산재평가차액은 결손에 보존하거나 출자금으로 전입하는 외에는 처분하지 못함
	이익잉여금의 처분	이익잉여금은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배당금, 이월금 등에 사용
	지분의 계산	조합의 재산에 대한 조합원의 지분은 납입출자금 및 사업의 이용분량에 따라 정관이나 규정으로 정할 수 있음

참고 2 | 경영공시 주요 항목별 체크리스트(예)

검토내용	서식	확인사항
(공시 의무) 정관, 규약, 규정	자체 양식	(정관) 설립 및 변경신고 된 최신 정관과 일치 여부
		(정관, 규약, 규정) 실제 조합에 구비 중인 사본과 동일 여부(날인된 사본 여부)
(공시 의무) 사업결산보고서	별지 제9호	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구분기장 이행 여부
		작성 내용과 회계원장, 재무제표 등과의 일치 여부
(공시 의무)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활동상황	별지 제10호 서식	의결기구의 개최 횟수(총회, 대의원 총회, 이사회 포함)
		작성 내용의 실제 의결 여부(날인된 의사록 구비여부)
		의사록의 적법성 여부(공고기간, 성원요건 도달여부)
(공시 의무) 사업결과보고서	별지 제11호	정관의 사업명칭을 기준으로 한 실적 관리 이행여부
설립신고 요건 충족 여부	해당 없음	설립동의자(조합원) 5인 이상
벌칙 해당 여부	해당 없음	금융업 및 보험업 사업 영위
		법정적립금의 적립 여부와 비율
		손실의 보전 및 해산 외에 법정적립금 사용
		총회 의결사항의 의결 실시 여부
과태료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때(경영공시 지연, 부실)

07 합병 및 분할, 해산 및 청산

가 합병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및 시행규칙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9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 법 제56조제2항(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 ·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8.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합병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가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합병의 정의 및 유형, 효과

-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협동조합으로 통합되는 절차
  - "흡수합병"이란 하나 이상의 협동조합이 존속하면서, 소멸되는 다른 협동조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A+B=A)
  - "신설합병"이란 기존의 모든 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해 사원 및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A+B=C)
- 합병 후 존속·설립되는 협동조합이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 · 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법 제56조 제3항)

합병 관련 유의사항

- 협동조합기본법은 상법과 달리 합병 반대 조합원의 지분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합병에 반대하는 조합원은 협동조합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26조)

흡수합병

- 흡수합병 절차

존속 협동조합 / **소멸 협동조합**

합병계약서 작성
- 존속 협동조합과 소멸 협동조합

↓

이사회 의결 / 이사회 의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조합원 총회 의결 / 조합원 총회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 총회 의결 후 14일 이내 대차대조표 작성 (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 부여

↓

(이의신청 X) 합병 승인으로 봄
(이의신청 ○)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합병신고 / 해산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신고수리 여부 통지
- 존속 협동조합에게 20일 이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단, 연장·재연장 가능)
- 미통지시 마지막날 다음날 신고수리 간주

↓

변경등기 / 해산등기
- 합병 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신설합병

- 신설합병 절차

소멸 협동조합 / **소멸 협동조합** / **신설 협동조합**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 예정 협동조합간 합병계약서 작성

↓

이사회 의결 / 이사회 의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조합원 총회 의결 / 조합원 총회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 총회 의결 후 14일 이내 대차대조표 작성 (단, 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 부여

↓

(이의신청 X) 합병 승인으로 봄
(이의신청 ○)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해산신고 / 해산신고 / 설립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설립신고에는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준용

↓

신고수리 여부 통지
- 신설 협동조합에게 20일 이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단, 연장·재연장 가능)
- 미통지시 마지막날 다음날 신고수리 간주

↓

해산등기 / 해산등기 / 설립등기
- 합병 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합병 세부절차

① 합병계약서 작성(법 제56조제1항)

- 합병당사자 협동조합 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법 제33조제2호)

-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조합원 총회(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 이사장은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56조제11항 및 제53조, 제54조)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 공고하거나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봄)

⑤ 신고(법 제56조 제2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

협동조합 유형	신고의 종류
존속하는 협동조합	합병신고
소멸하는 협동조합	해산신고
신설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⑥ 신고수리 여부 통지(법 제56조제5항)

- 시 · 도지사는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⑦ 합병등기(법 제65조)

- 합병신고를 수리(신고수리 간주일 포함)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

협동조합 유형	등기의 종류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등기
소멸하는 협동조합	해산등기
신설되는 협동조합	설립등기

⑧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유형	사업자등록
존속하는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협동조합	폐업신고
신설되는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신청

합병 신고 서류

• 합병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구분	신고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5	합병 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6	합병 후의 수입 · 지출예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부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합병되는 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합병되는 협동조합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타법인(상법상 회사) 흡수합병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시행령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및 시행규칙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흡수합병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기획재정부장관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⑩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 ·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② 법 제56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법 제56조제8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10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흡수합병 후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 · 지출 예산서
7.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흡수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0. 주주(「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사원을 말한다)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타법인 흡수합병의 정의 및 효과

- "타법인 흡수합병"이란 협동조합(A)이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B)와 청산절차 없이 하나의 협동조합(A)으로 통합되는 절차
-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이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 · 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청산절차 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법 제56조제3항)

타법인 흡수합병 관련 유의사항

-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법 제56조제6항)이나,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를 흡수합병할 수 있음(법 제56조제7항)
- 타법인 흡수합병 역시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출자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합병으로 존속 협동조합과 소멸회사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56조제11항 및 제53조, 제54조, 상법 제232조 및 제287조의41)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 및 감사는 합병계약서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 후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의 정기총회가 종료하는 때 퇴임(상법 제527조의4제1항)
- 소멸 주식회사의 합병반대 주주는 상법 제530조,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존속 협동조합의 합병반대 조합원은 지분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탈퇴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법 제26조)

타법인 흡수합병 절차

존속 협동조합	소멸 회사	
합병계약서 작성		• 존속 협동조합과 소멸회사간 합병계약서 작성
⬇		
	주요 서류 비치 및 반대의사 통보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인 경우에만) 주요서류 본점 비치(주주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간), 합병 반대 주주의 반대의사 통보(주주총회 전일까지)
⬇		
이사회 의결	이사회 의결	• (존속 협동조합)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만)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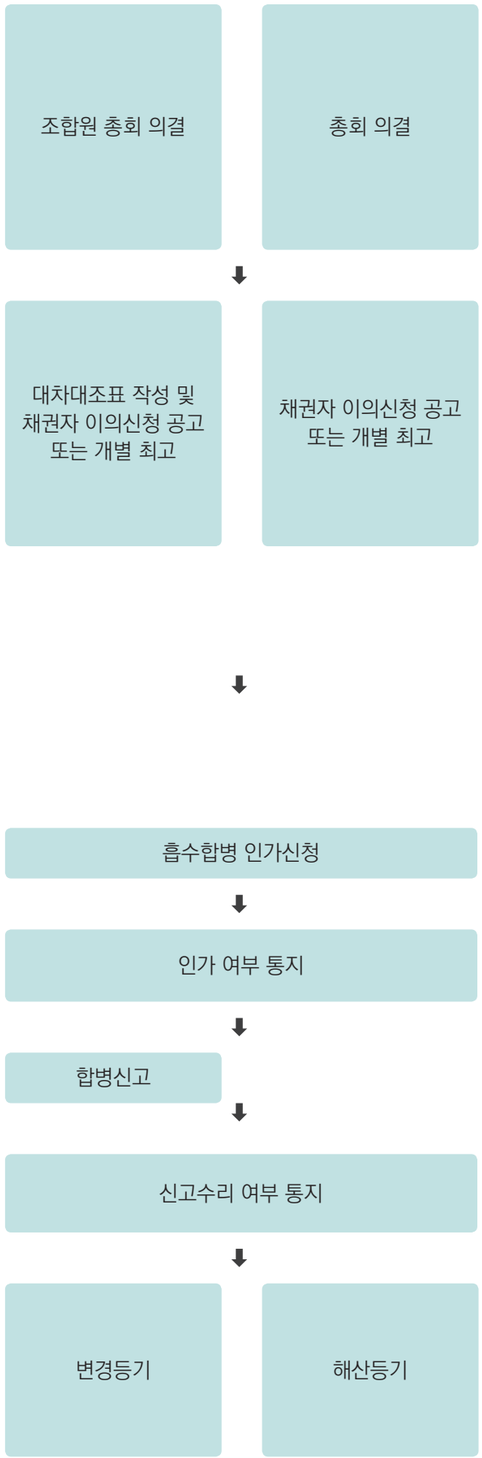

① 합병계약서 작성(법 제56조제1항)

- 합병으로 존속할 협동조합과 소멸할 회사 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 기재

② 주요 서류 비치(소멸회사만 해당)

-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합병계약서, 대차대조표 등 주요 서류 본점 비치(상법 제522조의2, 제603조)

③ 이사회 의결

- (존속 협동조합) 1)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2) 조합원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법 제33조제2호)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합병계약서의 승인 및 총회의 소집과 총회 의안(합병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상법 제362조)

④ 총회

존속 협동조합	소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조합원 총회	주주총회, 보고총회	사원총회, 보고총회	사원총회
–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 찬성 의결	– 출석주주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함)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 소집해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이사회 공고로 갈음 가능)	– 총사원 1/20이상, 총사원 의결권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없이 사원총회 소집해 합병에 관한 사항 보고(이사회 공고로 갈음 가능)	– 총사원의 찬성으로 의결

- (존속 협동조합) 조합원 총회
  · 이사장은 조합원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법 제29조제1항제7호 및 제2항)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주주총회, 보고총회
  · 대표이사는 총회 개최 2주(소규모 회사의 경우 10일) 전까지 계약의 주요내용 또는 요점으로서 주주의 합병 찬반 결정에 필요한 '합병계약의 요령'을 기재하여 주주총회 소집 통지(상법 제363조, 제530조, 제374조 제2항)
  · 합병 반대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일 전일까지 반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상법 제522조의3 제1항)

·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상법 제434조)

·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소멸 주식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100이상을 존속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경우(상법 제527조의2), 이사회 승인결의로 대체 가능(상법 제526조의5)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상법 제526조)

- (소멸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 총사원의 반수 이상, 총사원의 의결권의 3/4이상을 가지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상법 제598조, 제585조)

-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사원총회, 보고총회

· 총사원의 찬성으로 의결(상법 제287조의41, 제230조)

· 채권자보호절차 종료 후 지체없이 사원총회를 소집하고 합병에 관한 사항을 보고(상법 제603조, 제526조)

⑤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존속 협동조합	소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차대조표 작성	-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대차대조표 등 주요서류 본점 비치	-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일 이후 6개월까지 대차대조표 등 주요서류 본점 비치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30일 이상) 내에 신청하도록 공고			

- 대차대조표는 합병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합병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존속 협동조합)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대차대조표 작성(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신청하도록 공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각 합병 예정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 승인으로 봄) (법 제56조 제11항 및 제53조, 제54조)

- (소멸회사)

· 소멸회사의 총회 의결일로부터 2주 전까지 대차대조표 작성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신청하도록 공고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 또는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봄) (상법 제527조의5, 제603조, 제287조의41, 제232조)

⑥ 인가신청(시행령 제13조 제2항)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흡수합병인가 신청

⑦ 인가 여부 통지(시행령 제13조 제3항)

-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합병인가증(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3 서식 활용) 발급

- 60일 이내에 수리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기간(연장 또는 재연장 기간 포함)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인가한 것으로 봄

⑧ 신고(법 제56조 제2항)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

유형	신고의 종류
존속하는 협동조합	합병신고
소멸하는 회사	해산신고

⑨ 신고수리 여부 통지(법 제56조 제5항)

- 시 · 도지사는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⑩ 변경·해산 등기

유형	등기의 종류	등기기한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등기	신고수리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멸하는 회사	해산등기	(주식회사,유한회사) - 보고총회 종료 후, 본점소재지 2주, 지점소재지 3주 이내
		(유한책임회사) - 합병 후 지점소재지에 2주 이내

- (존속 협동조합) 변경등기
  ·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 소재지에 변경등기(법 제65조)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 유한회사인 경우) 해산등기
  · 보고총회 종료 후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 해산등기(상법 제528조, 제602조)
- (소멸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인 경우) 해산등기
  · 합병 후 2주내 지점소재지에 해산등기(상법 제287조의41, 제233조)

⑪ 사업자등록

유형	사업자등록
존속하는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회사	폐업신고

타법인 흡수합병 인가서류 및 인가기준

•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

구분	신청서류
1	정관 사본 1부
2	합병계약서 사본 1부
3	합병을 의결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4	임원명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1부
5	흡수합병후의 사업계획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1부
6	흡수합병후의 수입 · 지출예산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1부
7	출자 1좌의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부
8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1부
9	흡수합병되는 법인이 합병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1부
10	주식회사의 주주(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또는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시행령 제13조 제1항)

구분	흡수합병 인가 기준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①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 협동조합은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해야 함(법 제5조)
-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하고,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 운영을 준수하며, 투기나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면 안 됨(법 제6조)

②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존속하는 협동조합에는 협동조합기본법, 흡수되는 주식회사 등에는 상법이 적용됨
- 흡수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멸법인과 존속 협동조합 모두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함(법 제56조제11항, 제53조, 제54조, 상법 제232조)

③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흡수합병 후 존속법인은 협동조합이므로 협동조합기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정리
- 협동조합은 상장이 불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중 상장법인은 상장폐지 절차를 사전에 진행
-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어서는 안 되므로 필요시 주식양도계약, 교부금 합병 등을 통해 지분 정리
- 협동조합은 자기주식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자사주 소각 또는 처분
- 협동조합의 지분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으므로 피담보채무를 사전에 상환하여 질권 소멸
-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다 분할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및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법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합병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⑪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6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① 영 제7조제2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
2. 신고한 사항의 변경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신고한 사항 중 정관, 임원 등 변경 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본
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후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 · 지출 예산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차대조표와 출자감소의 의결, 채권자 공고 및 이의신청의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자 1좌당 금액이 감소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증(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명칭, 이사장 또는 회장,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어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협동조합등은 다른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 · 도지사는 그 사실을 주소가 변경되기 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 · 도지사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시 제출받은 서류를 새로운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로서 변경신고한 사항이 법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분할의 정의 및 유형, 효과

- "분할"이란 한 개의 협동조합이 둘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분리되는 절차
  - "소멸분할"이란 기존의 협동조합이 소멸하면서 2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협동조합을 승계하는 것(A=B+C)
  - "존속분할"이란 기존의 협동조합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해 1개 이상의 협동조합을 신설해 기존 협동조합을 승계하고, 기존 협동조합은 나머지 영업을 가지고 존속하는 것(A=A+A′)
- 분할 후 신설·존속되는 협동조합이 분할협동조합의 권리 · 의무(공법상 권리의무, 조합원의 수용, 소송절차 수계 등 포함)를 포괄승계(법 제56조 제3항)

분할 관련 유의사항

- 분할로 인한 신설 협동조합은 분할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별도의 절차 없이 승계(법 제56조 제3항)함 (단, 승계되는 권리·의무의 범위는 분할계획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에 따름)
- 상법상 주식회사 등의 분할과 달리, 협동조합의 분할은 조합원 및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 조합재산과 영업 등이 함께 분할되는 것이 원칙임
  - 조합원 및 조합원의 출자금 분할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과 영업 등만 분할되는 형태의 물적분할은 할 수 없음
- 협동조합의 분할로 신설·존속되는 협동조합 역시 협동조합이어야 함(즉, 분할의 결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신설·존속될 수는 없음)

소멸분할

- 소멸분할 절차

소멸 협동조합

분할계획서 작성	•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	
이사회 의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조합원 총회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 분할기일을 작성기준시점으로 하여, 총회 의결 후 14일 이내 작성(단, 총회 이전에도 대차대조표 작성 가능) • 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 부여
⬇	(이의신청 ×) 분할 승인으로 봄 (이의신청 ○)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
해산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해산등기	• 분할의결 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신설 협동조합 | **신설 협동조합**

설립신고 | 설립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설립신고에는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준용

⬇

신고수리 여부 통지 | 신고수리 여부 통지
- 신설 협동조합에게 20일 이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단, 연장·재연장 가능)
- 미통지 시 마지막날 다음날 신고수리 간주

⬇

설립등기 | 설립등기
-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

존속분할

- 존속분할 절차

존속 협동조합

분할계획서 작성
-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

이사회 의결
-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조합원 총회 의결
- 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

⬇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 또는 개별 최고
- 총회 의결 후 14일 이내 (단, 총회 이전에도 대차대조표 작성 가능)
- 30일 이상 이의신청 기간 부여

(이의신청 ×) 분할 승인으로 봄
(이의신청 ○)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

존속 협동조합 | **신설 협동조합**

변경신고 | 설립신고
-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
- 설립신고에는 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준용

⬇

신고수리 여부 통지 | 신고수리 여부 통지
- 신설 협동조합에게 20일 이내 신고수리여부 통지 (단, 연장·재연장 가능)
- 미통지 시 마지막날 다음날 신고수리 간주

⬇

변경등기 | 설립등기
-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
- (변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21일 이내

분할 세부절차

① 분할 계획서 작성(법 제56조 제1항)

- 분할 계획의 주된 내용 기재

② 이사회 의결(법 제33조 제2호)

- 작성된 분할계획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함
- 조합원 총회의 소집 및 총회 의안(분할승인) 상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

③ 조합원 총회(법 제29조 제1항 제7호 및 제2항)

-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총회소집 통지
-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④ 대차대조표 작성 및 채권자 이의신청 공고(법 제56조제11항 및 제53조, 제54조)

-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 작성(총회 이전에도 작성 가능)
- 대차대조표는 분할기일을 기준으로 작성(즉, 총회 전/후로 작성하였더라도, 분할기일까지의 변동사항 추가 반영 필요
- 협동조합은 총회 의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가 일정기간(3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ⅰ) 공고하거나 ⅱ)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
- 이의신청이 있으면 분할 협동조합은 채무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 제공(단, 이의신청이 없으면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봄)

⑤ 신고(법 제56조 제2항, 제4항, 제15조)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

협동조합 유형	신고의 종류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신고
소멸하는 협동조합	해산신고
신설되는 협동조합	설립신고

⑥ 신고수리 여부 통지(법 제56조 4항, 제15조 제2항, 제15조의2)

- 시 · 도지사는 분할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⑦ 변경등기(법 제64조), 해산등기(법 제66조), 설립등기(법 제61조)

- (소멸하는 협동조합)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 지사무소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 해산등기
-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분할의결) 후 21일 이내 변경등기
- (신설되는 협동조합) 출자금 납입 후 주사무소 소재지에 14일 이내 설립등기

협동조합 유형	등기의 종류	등기기한
존속하는 협동조합	변경등기	21일 이내
소멸하는 협동조합	해산등기	주사무소 소재지 14일, 지사무소 소재지 21일 이내
신설되는 협동조합	설립등기	출자금 납입 후 14일 이내

⑧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유형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존속하는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정정
소멸하는 협동조합	폐업신고
신설되는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신청

라 해산 및 청산

해산 관련 법령

법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법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법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 제1항 · 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 ·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법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11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 ① 법 제57조제2항(법 제8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이나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산 및 청산

- "해산"이란 존속할 이유를 잃은 협동조합이 본래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즉, 해산의결 이후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나 청산이 종결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
- "청산"이란 합병·분할 또는 파산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협동조합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협동조합의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

해산 사유(법 제57조 제1항)

-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 총회의 의결(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합병 · 분할 또는 파산

해산 절차

해산 협동조합

해산총회 및 청산인 취임
- 해산의결 및 청산인(이사장 원칙) 취임

⬇

해산신고 ⬇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 / 재산상태조사,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신고
  ※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조사 및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 해산일 및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주사무소) 등기

⬇

재산처분 총회
- 재산처분 방법 승인

⬇

※ 채무변제 등 재산처분 실행

잔여재산 처리
- 잔여재산 처리 등

⬇

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 총회
- 결산보고서 승인

⬇

청산종결등기
- 청산사무 종결 후 14일 이내

① 해산에 관한 총회의결 및 청산인 취임(법 제58조)

- 총회에서 해산이 의결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됨(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
-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재산상태 조사 및 재산목록·대차대조표 작성 등 청산사무 개시

② 해산신고(법 제5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 청산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

※ 해산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작성 및 다음 서류 첨부

구분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	해산총회 의사록 사본 또는 정관상 해산사유의 발생 증명 서류

- 시 · 도지사는 해산신고서를 받은 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미등기 협동조합의 경우 제외)

- 협동조합이 해산등기를 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포털(www.share.go.kr)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

※ '협동조합(연합회) 해산신고' 사무에 대한 권한을 얻은 후 이용 가능

③ 해산등기 및 청산인등기(법 제66조, 제67조)

- (해산등기) 청산인은 해산일로부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 (청산인등기)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

※ 상업등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위 2가지 등기를 동시에 진행

④ 재산처분 방법에 관한 총회 승인(법 제58조 제2항, 제4항)

- 청산인이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작성을 마치면,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출석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은 것으로 간주

⑤ 잔여재산 처리(법 제59조 제1항)

-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⑥ 청산사무 종결 및 결산보고서 총회 승인(법 제58조 제3항, 제4항)

- 청산사무가 종결되면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음(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조합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은 것으로 간주

⑦ 청산종결등기(법 제68조)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는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마 휴면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간주

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법 제57조의2(휴면협동조합의 해산) ①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사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내용 · 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협동조합은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신고기간 내에 등기를 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이 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에 관해서는 「상업등기법」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2항"으로, "「상법」 제520조의2제4항"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제5항"으로 본다.

휴면 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간주 절차

해산사유 발생	관보 공고	법원의 통지	해산 간주	청산종결 간주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	영업 계속 신고할 것을 관보를 통해 공고	법원에서 협동조합에 최후등기 통지서 발송	관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계속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산 간주	해산 간주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 청산 종결 간주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동조합이 계속 등기할 경우에는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음

① 해산사유 발생

-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협동조합의 경우 휴면협동조합으로 간주되어 해산사유 발생

②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 법원행정처장은 휴면 협동조합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영업계속신고)를 할 것을 관보를 통해 공고
- 이 경우 신고의 내용 · 방법 등은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항을 준용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제1항

상법 제520조의2(휴면회사의 해산) ①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로써 공고한 경우에,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로써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내에 등기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의 통지

- 법원(등기국)에서 협동조합에 '최후 등기 통지서' 발송

  * 최후등기 통지서란 최후 등기를 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법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간주 처리하기 전, 법인의 이해관계자(법인 대표이사 등)에게 법인을 계속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송한 통지서

④ 해산 간주

-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계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해산된 것으로 간주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산등기(상업등기법 제73조)

법 제66조의2(계속등기)

법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휴면 협동조합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속 등기한 경우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함

⑤ 청산종결 간주

- 해산 간주된 협동조합이 3년 내 계속 하지 않은 경우 해산간주일로부터 3년 경과한 때 청산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청산종결 등기(상업등기법 제73조)

참고 | 해산과 청산 관련 준용사항

• (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관련 조항 준용

「민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79조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한 경우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
제81조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있고 의무 부담
제87조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 가능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제88조	①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2월 이상 ②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재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함
제89조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함
제90조	청산인은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함
제91조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가능 ②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인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청구 가능
제93조	①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 ②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임무 종료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바 조직변경

법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및 시행규칙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 인가 · 허가 ·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⑦ 시 ·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 · 도지사가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시행규칙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4.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원 명부
5.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6.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입 · 지출 예산서
7. 제6호서식에 따른 조합원 명부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 절차 이행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 인가 · 허가 · 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서류(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조직변경 개요

- "조직변경"이란 회사가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률상 조직을 변경하여 다른 종류의 회사로 변경되는 것
  - 법인격의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법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합병과 구분
- 협동조합기본법상 조직변경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
- 다만, 부칙 제3조에 의해 '12.12.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비법인)가 '16.11.30일 까지 협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경우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하였으나, 기한 경과로 부칙에 의한 사업자(비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음

조직변경 절차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	채권자보호절차	➡	신고
총회개최 7일 전까지 공고 및 소속 구성원 전원 동의 결의		채권자에 대해 이의신청 공고(30일 이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
신고확인증 발급	➡	**등기**	➡	**사업자등록**
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발급		본점은 14일 이내 지점은 21일 이내		기존 사업자등록에 대한 변경신청

① 총회개최 7일 전까지 총회개최 공고 및 총회 개최

-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
- 창립총회 관련 안건을 조직변경 총회에서 결의
-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정관, 출자금,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구분	조직변경시 정관 결의사항
정관	협동조합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
출자금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자본)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함
그 외	지분 및 사내유보금의 정리, 사채상환 완료 등

- (지분)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인 경우,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지분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분의 정리 필요

지분정리가 필요한 경우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이유	지분정리방법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가 총 출자좌수의 30% 이상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	주식양도계약
자사주 보유	협동조합은 자사주식을 보유할 수 없음	자기주식처분 주주배분, 소각
질권 설정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3항	피담보채무 상환

- (사내유보금)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배당 등으로 사회에 유출되지 않고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은 총회의 결의(일반정족수로 의결)를 통하여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음
- (사채상환) 협동조합은 사채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주식회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 사채상환 완료

②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 채권자 보호절차에 대하여는 협동조합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

- 조직변경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조직변경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30일 이상)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함

* 최고(催告)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

- 채권자가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조직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보며,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③ '조직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제출

④ 조직변경신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직변경 신고확인증(시행규칙 별지 제8호2 서식)' 발급

- 시 · 도지사는 조직변경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봄

⑤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한 날(신고서를 요하는 경우 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조직변경 관련 해산등기의 경우 청산종결등기는 필요 없으며, 해산등기와 동시에 등기기록 폐쇄)

⑥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며,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 조직변경신고 첨부서류

구분	조직변경신고 첨부서류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임원명부(별지 제3호서식)
5	사업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6	수입 · 지출예산서(별지 제5호서식)
7	조합원 명부(별지 제6호서식)
8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대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 좌수를 적은 서류
10	채권자의 이의신청절차 이행(채권자 의견제출 공고문 등)과 이의신청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의제기한 채권자 명부, 공탁증명서 등)
1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 인가 · 허가 · 승인 등을 받은 서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

조직변경의 효과

- 기존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 있어서는 같은 법인으로 간주(법 제60조의2제1항)
  - 기존 법인의 근로관계, 사회적기업인증, 사업실적 등은 그대로 인정
- 인·허가의 승계
  - 기존 법인에서 취득한 인·허가의 인정 여부는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달리 판단됨
  -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그 인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60조의2제5항)

인허가 승계의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례

"협동조합 기본법 제105조의2의 취지는 기존 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같은 조 제1항 후단에서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 · 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종전 법인의 재산상 권리 · 의무 등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종전 법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 · 의무가 유지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기존 법인이 법령상 인허가의 요건을 충족하였던 사실이나 그로 인해 해당 인허가를 신청한다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이익까지 그대로 승계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습니다."(법제처, 보건복지부 안건번호19-0167)

조직변경 관련 사항

-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10호와 관련하여 법 제14조제1항 및 상법 제287조의44, 제232조에 따라 '채권자보호절차' 진행
- 법 제15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설립최소기준 및 법 제60조의2제5항에 따른 인허가등 요건을 충족해야 함
- 법인등은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 · 인가 · 허가 ·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 등을 먼저 받아야 함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시 조직변경을 수리한 시 · 도지사는 기존 법인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직변경에 관한 내용을 공문으로 송부

08 등기

가 설립등기

법 제61조(설립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이사장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등기소)에 설립등기
- 설립등기신청서 기재사항

구분	기재사항	비고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장은 이사로도 등기하여야 함)

-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간인 날인 필요)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1	설립등기신청서	1. 목적,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기재

구분	신청서와 첨부서류	비고
2	정관	원본 지참 시 사본제출 가능
3	총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4	설립신고확인증	법 제61조 설립신고서 대신 확인증 제출
5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 · 초본	임원 전원 제출, 법인이 임원인 경우 법인의 취임승낙서와 직무수행자의 선임 증명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 · 초본 제출
6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7	출자금 총액 납입증명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잔고증명서 또는 출자금납입확인서 등 모두 가능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또는 출자재산영수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9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합병이나 분할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1	설립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
2	기본법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기본법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익)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사무소의 설치등기

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
  - 지사무소 등기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통합등기 가능

• 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등기신청서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설치 연월일 기재
2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의사록 제출필요 의사록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 기재
3	등기신청수수료	
4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주사무소와 지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의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첨부
5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 이전등기

법 제63조(이전등기)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이사장이 전 소재지와 현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
- 구 사무소 소재지 등기소에 신청 가능

• 사무소 이전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류

구분	신청서류	비고
1	변경등기신청서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에 비치
2	정관	정관 사본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원본과 동일함을 인증하여 제출
3	이사회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을 제출
4	조합원총회의사록, 변경신고확인증	정관에 주사무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 주사무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등기신청수수료	
6	등록면허세납부확인서	신소재지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와 구소재지의 시군구에 대한 확인서를 각각 제출
7	위임장	대표가 아닌 자가 신청하는 경우

라 변경등기

법 제64조(변경등기) 준용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등기 대상에 따른 등기내용

변경등기대상	등기기한	신청인	비고
정관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이사장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첨부
출자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	〃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	변경일로부터 21일 이내	〃	〃

•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정관	원본 제출 또는 원본 지참하여 사본 제출
2	총회 의사록	공증 받은 원본 제출
3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4	위임장	이사장 아닌 대리인 신청시
5	- 채권자에게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 사임: 사임서, 사임한 임원의 인감증명서 - 취임: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임원변경시
7	이사장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신고서, 인감대지	이사장변경시
8	- 출자금 및 출자좌수 변동내역 확인서(및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재산인계서 등) - 출자감소에 따른 변경시에는 출자감소 의결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출자좌수, 출자금 총액변경시

마 합병등기

법 제65조(합병등기)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수리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 합병신고를 한 날(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4일 이내에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
- 합병 주체별 협동조합의 등기사항

구분	등기사항	비고
1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 → 변경등기	
2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 → 해산등기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3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 → 설립등기	

바 해산등기

법 제66조(해산등기)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
- 청산인이 신청인이 되며, 해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사 계속등기

법 제66조의2(계속등기)

제66조의2(계속등기) ① 제57조의2제4항에 따라 협동조합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등기를 할 때에는 새로 선임된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계속등기신청서에는 계속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법 제57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산으로 간주된 협동조합의 경우,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을 계속할 수 있음
- 협동조합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함

아 청산인등기 및 청산종결등기

청산인등기

법 제67조(청산인등기)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인은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법인인감을 등기
- 첨부서류
  - 청산인이 해산을 결의한 내용의 조합원총회의사록(공증필요)
  -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위 조합원총회에서 선임된 경우 그 의사록이나 정관에 청산인으로 지정된 자가 있는 경우 그 정관)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	취임승낙서	
3	인감증명서	
4	인감신고서	
5	인감대지	

청산종결등기

법 제68조(청산종결등기)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
- 신청서에 청산사무 종결 관련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구분	첨부서류	비고
1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2	조합원 총회 공고문	
3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총회의사록	공증받은 원본 제출
4	청산결산보고서	출자금분배확인서, 출자금분배 내역서 첨부
5	채권자보호절차를 경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 조직변경등기

법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날부터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또는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등기
-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 협동조합은 설립등기
  -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과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함(상업등기법 제66조)
    · (조직변경 후의 법인에 관한 설립등기) 변경 전 회사의 성립 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하며,
    · (조직변경 전의 법인에 관한 해산등기)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상업등기법 제65조)

※ 협동조합기본법 제70조는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설립등기 시 기존 법인의 업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법인의 말소등기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 소명

- 신규등기번호를 부여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에 대하여 정정(변경)신청
  - 기존 등기번호와 신규 등기번호를 함께 제출

등기의 기산일

-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 계산(법 제109조)

참고 1 | 등기 관련 준용사항

-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기본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 준용

협동조합 등기 관련 준용사항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62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도 등기
제65조	법인의 해산등기 신청서에는 해산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이사가 청산인을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제12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 불가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상업등기법」을 준용하는 주요사항	
제24조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제24조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신청의 경우 증명서면 첨부
제25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

참고 2 | 등기 관련 내용정리

구분	관련조항	관할 등기소	등기기한	신청인
설립	제61조	주사무소 소재지	출자 납입 완료 후 14일	이사장
지사무소 설치	제62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21일 지사무소 28일	이사장
이전	제63조	전 · 현소재지	전 · 현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변경	제64조①	각 사무소 소재지	각각 21일	이사장
출자금변경	제64조②	각 사무소 소재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사장
합병	제65조	각 사무소의 소재지	합병신고를 수리(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 날부터 14일	이사장
해산	제66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계속	제66조의2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이사장
청산인	제67조	주사무소	취임일부터 14일	청산인
청산종결	제68조	주사무소, 지사무소	주사무소 14일 지사무소 21일	청산인
조직변경	제68조의2	본점 및 지점 소재지	본점 14일, 지점 21일	이사장

09 감독

가 감독

법 제70조의2(감독)

제70조의2(감독) 시 · 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 · 도지사는 직권 또는 신고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동사항을 조사할 수 있음

- 사실관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가능
- 다만, 현장 조사 시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고, 절차를 고지하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시 ·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실제 활동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조합원 수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저 발기인 수(5인) 미만으로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 법 제28조에 따른 총회를 2년 이상 연속하여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5조에 따른 협동조합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협동조합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한 사업
  - 아래 각호의 필수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적용)
    - ·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 ·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 ·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필요한 조치

- 시 · 도지사는 협동조합이 협동조합기본법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명령,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 · 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하였거나, 협동조합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소도 가능함
  - 설립 취소할 경우 비교형량을 하되 ⅰ) 청문 ⅱ) 의견제출의 기회 부여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는 준수하여야 함

조사 사유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

※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칙 참고

10 우선출자

※ 해당 부분은 모든 협동조합이 아니라 우선출자를 발행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에게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8조의2(우선출자)

법 제22조의2(우선출자) ①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가 양호한 협동조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 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 1좌의 금액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과 같아야 하며, 우선출자의 총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
2. 납입출자금 총액

③ 조합원이 제2항에 따른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우선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과 선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22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정관으로 정하는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 사이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선출자증서의 발행, 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의 양도, 우선출자자 총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8조의2(우선출자 협동조합)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연도의 직전연도(설립된 연도에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설립연도를 말한다)에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하고 있을 것
2. 부채총액을 자기총자본(납입출자금, 우선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으로 나눈 비율이 200퍼센트 이하일 것

② 법 제22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기자본"이란 제1항제2호의 자기총자본에서 우선출자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우선출자 정의

- 우선출자는 잉여금 배당에서 조합원 출자(보통출자)보다 우선적 지위(우선배당)을 가지는 출자로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하는 출자를 말함. 주식회사의 우선주와 유사함
  - 협동조합은 자기자본 확충을 위해 우선출자 제도 활용 가능

우선출자 발행요건

• 우선출자는 일반협동조합만 발행 가능함

- 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우선출자)에 대한 준용조항이 없으므로 우선출자 발행 불가능

• 우선출자 발행을 위해서는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상태 양호'라는 2가지 발행요건을 충족해야 함

- 첫째, 법 제49조의2에 따른 경영공시를 이행해야 함

  *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무공시 대상(조합원 200인 또는 납입출자금 30억 원 이상)이 아닌 협동조합도 연중 협동조합 홈페이지(www.coop.go.kr)에 경영공시 가능

  ** 신규 설립으로 사업실적이 없는 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와 수입 · 지출예산서 등 설립 신고 내용 그대로 공시

- 둘째, 부채비율(부채총액/자기총자본)이 200%이하로 재무상태가 양호하여야 함

  * 부채비율은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중 부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재무구조 중 타인자본의존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경영 지표임

• 우선출자를 발행하려는 협동조합은 정관에 '우선출자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법 제16조제1항제6호)

- 법에 따라 우선출자 발행근거, 우선출자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은 정관 필수 기재 사항임

> ☞ **정관 예시(정관 필수 기재사항)**
> 정관 제00조(우선출자) ① 조합은 자기자본의 확충을 통한 경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잉여금배당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우선출자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00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00이상 100분의 0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개정('20.3.31. 시행) 이전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정관에 우선출자 근거 조항을 신설한 후 우선출자 발행이 가능

  * 정관변경 절차: 총회 공고 → 총회 의결 → 정관변경 신고(시 · 도지사)

우선출자 발행한도

• 우선출자 발행 총액은 자기자본 또는 납입출자금 총액 중 더 큰 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음

- 우선출자 발행 총액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은 납입출자금,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함. 여기에 우선출자금은 포함되지 않음

  * 자기자본이란 기업의 자본 중에서 출자의 원천에 따라 출자자(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에 귀속되는 자본 부분. 채권자에 귀속되는 타인자본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임

  ** 우선출자 발행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에서 우선출자금 제외한 이유

⇒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에 우선출자금이 포함되지만, 우선출자 발행한도의 기준인 자기자본에 우선출자금을 포함할 경우 우선출자를 발행할수록 순환하여 자기자본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발행한도 계산에서는 제외

> ☞ **(참고) 우선출자 발행총액 계산 예시**
> - 납입출자금: 10억
> - 법정적립금: 1억
> - 임의적립금: 1억
> - 당기발생잉여금: 2억
> - 자기자본(납입출자금(10억)+적립금(2억)+기타 이익잉여금(2억)): 14억
>
> ⇒ 우선출자 발행총액 한도: 4.2억

• 조합원이 우선출자에 참여할 경우 조합원 1인의 납입출자금 총액과 우선출자 총액을 합한 금액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 **(참고) 조합원 1인 우선출자금 한도 계산 예시**
> - 납입출자금 800만원
> - 적립금, 기타 이익잉여금 등 200만원 → 자기자본(출자금+적립금+기타 이익잉여금) 1,000만원
> - 우선출자 총액 한도(자기자본의 30%): 300만원
> - 조합원 1인의 우선출자 한도(우선출자 총액의 30%): 90만원
>
> ⇒ 조합원 A가 기존에 240만원(출자금 총액의 30%)을 출자하고 있다면, 우선출자에 참여할 수 없음
> ⇒ 조합원 B가 기존에 80만원(출자금 총액의 10%)을 출자하고 있다면, 10만원까지 우선출자 가능

• 우선출자의 총액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태료 부과

- 협동조합의 우선출자 총액한도(법 제22조의2제2항)를 초과하거나 조합원 1인의 우선출자 한도(법 제22조의2제3항)를 초과하여 우선출자를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법 제119조제2항제2호)

우선출자 배당

•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정관으로 정한 최저 배당률과 최고 배당률의 범위 내에서, 정기총회에서 결정함

> ☞ **정관 제00조(우선출자)** ② 우선출자에 대한 배당은 제00조에 따른 출자에 대한 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하되, 그 배당률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00이상 100분의 00이하의 범위안에서 정기총회에서 정한다.

- 매 회계연도 결산 정기총회에서 배당 가능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정관으로 정한 최저배당률과 최고배당률 사이에서 우선출자 배당률을 결정하고, 우선출자 배당 실시

  * 협동조합이 손실금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 할 수 있음(법 제51조 제2항)

- 배당 가능한 잉여금이 없는 경우 우선출자 배당은 불가능함

• 우선출자 배당은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에 대한 출자배당보다 우선하여 실시

-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은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이어야 하므로 납입출자금과 우선출자금에 대한 배당의 합은 전체 배당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51조 제3항)

• 우선출자는 협동조합의 '지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우선출자에 대한 지분환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 지분은 조합원 지위에 근거하여 조합원이 조합 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의무임. 개별조합의 정관에 따라 지분의 범위가 확정되며, 조합원은 탈퇴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분환급청구 가능

우선출자자 자격

• 우선출자자 자격에 대해서는 법상 별도의 제한이 없음

- 협동조합의 조합원,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법인 포함) 누구나 우선출자 신청 가능

우선출자자 의결권과 선거권

• 우선출자자는 협동조합 내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과 선거권은 없음

시행령 제8조의3-제8조의13(우선출자)

제8조의3(우선출자 발행사항의 공고) 협동조합은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발행할 때에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2주 전까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내용, 좌수(座數),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모집방법을 공고하고 출자자 및 우선출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4(우선출자의 청약)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좌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해당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3.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4.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5.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6.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7.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

제8조의5(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①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이사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제8조의6(우선출자증서의 발행)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납입이 있기 전에는 우선출자증서(이하 이 장에서 "증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 후 그 인수자에게 지체없이 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8조의7(증서의 형식) 증서는 기명식으로 한다.

제8조의8(증서의 기재사항)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이사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협동조합의 명칭
2.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3. 우선출자의 내용
4. 증서번호
5. 발행 연월일
6. 우선출자 좌수
7.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제8조의9(우선출자자명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선출자자명부를 갖춰 두어야 한다.

1. 증서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증서의 수와 번호
3. 증서의 취득 연월일

제8조의10(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제8조의11(우선출자의 양도) ① 우선출자는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증서 발행 전의 양도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우선출자자는 우선출자를 양도할 때에 양수자에게 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의12(우선출자자 총회) ① 협동조합은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은 발행한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출자자 총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의13(통지와 최고) 우선출자신청인 또는 우선출자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따로 그 주소를 협동조합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선출자청약서 또는 우선출자자명부에 적힌 주소로 한다.

우선출자 발행 절차

① 우선출자 발행 이사회 의결

- 우선출자 발행은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 의결사항임(법 제33조 제1호)

② 우선출자 모집공고

- 우선출자 모집방법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공모 및 사모방식 모두 가능함

공모: 일반에 널리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우선출자 모집
사모: 특정 소수의 투자자나 관계회사, 조합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우선출자 모집

- 협동조합 홈페이지 등 외부 게시판에 우선출자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며, 우선출자자 공고에 대해서 조합원 및 우선출자자에게 통지해야 함
- 우선출자 모집 공고문에는 우선출자의 내용, 우선출자 좌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모집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③ 우선출자 청약 접수

- 우선출자 청약을 하려고 하는 자는 우선출자자 청약서에 우선출자 좌수, 인수가액, 주소를 적고 기명날인을 하여야 함
- 우선출자자 청약서 서식은 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법령상 필수 규정사항 9가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우선출자자 청약서 필수 기재사항
① 협동조합의 명칭, ② 출자 1좌의 금액 및 총좌수, ③ 우선출자 총좌수의 최고한도, ④ 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좌수, ⑤ 협동조합의 자기총자본, ⑥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내용 및 좌수, ⑦ 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⑧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을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⑨ 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④ 우선출자 배정

- 이사장은 발행하려는 우선출자 규모를 초과하여 우선출자 청약이 접수된 경우 청약자별 우선출자 발행 금액을 배정하여야 함

⑤ 우선출자 금액 납입

-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⑥ 우선출자 증서 발행

- 협동조합은 우선출자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금을 납입한 우선출자자에게 우선출자 증서를 발행하여야 함

- 우선출자 증서의 형식은 기명식으로 하며, 법령상 필수 기재사항 7가지가 포함되어야 함

※ 우선출자 증서 필수 기재사항
① 협동조합의 명칭, ② 우선출자의 액면금액, ③ 우선출자의 내용, ④ 증서번호, ⑤ 발행 연월일, ⑥ 우선출자 좌수, ⑦ 우선출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우선출자자 명부 관리

-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에 우선출자자 명부를 비치하야야 하며, 우선출자자 명부에는 법령상 3가지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우선출자자 대상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우선출자자 명부를 관리해야 함
  - 우선출자자 명부에 대한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는 가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열람만 허용

※ 우선출자자 명부 필수 기재사항
① 우선출자 증서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② 증서의 수와 번호, ③ 증서의 취득 연월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消却)

- 협동조합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선출자자로부터 우선출자를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음
  - 우선출자 매입소각 방법에 대한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강제소각 또는 임의소각 모두 가능함

* 매입소각이란 협동조합이 발행한 우선출자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 기한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선출자자로부터 다시 사들여 소각하는 것을 말함

☞ **우선출자 매입소각 방법**
- 강제소각: 우선출자자 개인인의 동의 없이 소각하는 방법. 강제소각이 가능한 우선출자를 발행할 경우에는 우선출자청약서 및 증서에 기록하여야 함
- 임의소각: 우선출자자 개인인의 동의를 얻어 소각하는 방법. 우선출자자의 소각신청에 따라 소각 절차 진행

* (임의소각 절차 예시) 우선출자자의 소각신청서 제출 → 소각 신청 건에 대한 이사회 의결 → 우선출자금 반납 → 차년도 결산총회 시 재무제표 반영을 통해 소각 완료

우선출자의 양도

- 우선출자 증서는 양도할 수 있음
  - 우선출자 증서를 양도할 경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세금 납부 의무 발생

우선출자자 총회

- 우선출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우선출자자로 구성된 우선출자자 총회를 별도로 두어야 함
- 우선출자자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선출자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우선출자자 총회는 우선출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말하며, 총회의 의결은 우선출자 총좌수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좌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 정관 변경이 우선출자자에게 손해인지 이익인지 모호한 경우도 우선출자자 총회 의결을 거치는 것을 권고
- 우선출자자 총회의 구성, 소집절차, 의결방법 등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

참고 | 우선출자 공고문 예시

제 2020 - 00호

우선출자 모집공고

00협동조합의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출자를 모집함을 공고합니다.

1. 우선출자의 내용
   ① 모집차수: 1차
   ② 모집대상: 조합원, 직원 및 그 외의 자
   ③ 모집방법: 공모
   ④ 모집총액: 50억원(₩5,000,000,000)
   ⑤ 기 발행 우선출자 좌수 및 금액
   * 출자좌수: 0좌
   * 금 액: 0원
2. 모집좌수: 1,000,000좌
3. 발행가격: 1좌 5천원(기명식)
4. 납입기일: 2020.00.00(월)

2020. 00. 00.

* 문의처: 000팀(☎000-000-000, FAX: 000-000-000)

0000협동조합 이사장(직인)

※ 공고문 내용은 우선출자 모집 시 필수 공고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